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2009. 5. 21(목) 14:00 ~ 18:00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세부일정 P·r·o·g·r·a·m

▶ 사회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책임연구원)

14:00~14:10 개회 및 인사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섹션1 도시와 미술장식, 그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하여

14:10~14:50 **발제 (각 20분)**
• 미술장식 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과제
 이재언 (미술평론가)
• 공공미술의 새로운 실험, 도시갤러리
 이광준 (기획자, 도시갤러리 전 책임큐레이터)

14:50~15:00 휴식

섹션2 미술장식 제도의 새로운 길 찾기

15:00~16:00 **발제 (각 20분)**
• 미술장식 제도, 문제와 대책
 서성록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하나의 제안
 오상길 (예술과 시민사회 대표)
• 건축, 도시, 공공 속의 미술 : 미술장식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하여
 배형민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16:00~16:10 휴식

종합토론

16:10~18:00 **토론 (각 5분)**
김방희 (제주대 미술학과 교수)
염기설 (예원화랑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이사)
김세준 (숙명여대 문화관광학과 교수)
안병철 (서울시립대 환경조각학과 교수)
정준모 (미술평론가)
이영범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18:00 폐회

목 차 C·o·n·t·e·n·t·s

섹션1 도시와 미술장식, 그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하여

미술장식 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과제 이재언 (미술평론가)	7
공공미술의 새로운 실험, 도시갤러리 이광준 (기획자, 도시갤러리 전 책임큐레이터)	21

섹션2 미술장식 제도의 새로운 길 찾기

미술장식 제도, 문제와 대책 서성록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37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하나의 제안 오상길 (예술과 시민사회 대표)	51
건축, 도시, 공공 속의 미술 : 미술장식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하여 배형민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61

종합토론

김방희 (제주대 미술학과 교수)	69
염기설 (예원화랑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이사)	71
김세준 (숙명여대 문화관광학과 교수)	73
안병철 (서울시립대 환경조각학과 교수)	75
정준모 (미술평론가)	77
이영범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83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85

섹션1

도시와 미술장식,
그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하여



미술장식 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과제

이재언 (미술평론가)

1. 들어가는 글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된 지 이제 15년 여 되어간다. 근대적 도시개발로 인해 피폐해진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작된 이 제도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뜨겁다. 대체적인 논의의 방향은 이 제도의 폐단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쪽으로만 쏠려 왔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이는 데 반해 전문가들의 입장은 상당히 다른 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제도야말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는 제도이다 보니 시민들의 소박한 반응들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에당초 도시의 환경 개선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공공재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건축주들에게만 부담 지우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런 가운데 이 제도는 당연히 규제의 성격을 띠게 되고 ‘규제 철폐’라는 경제적 테제가 힘을 얻을 때마다 언제나 뜨거운 감자의 신세였다. 이 문제의 논의는 ‘예술/시민’의 관계로 귀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논의는 ‘건축주/예술가’의 관계이거나 아니면 ‘공공미술/일반미술’ 혹은 ‘디자인/건축/미술’ 간의 논의, 아니 알력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왜 이 제도가 존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소박한 시민들의 욕구와 반응이 어떠한지 그 결과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가의 논의로 환원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반영하고 아울러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가늠하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논의를 함에 있어 우리가 또 한 가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한 가지 전제를 잊어서도 안 된다. 공공의 이익과 이해를 위해 필요한 공공미술은 보다 정당한 공공의 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미술의 잣대를 이 제도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현행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제도 상의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는 사유재이다. 사유재이면서도 공적 규제와 개

입을 받도록 되어 있는 모호한 대상이다. 따라서 사유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공공적인 도시미술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어렵고도 중대한 목적을 향해 논의를 개진해야 한다.

2. 개발시대 도시의 초상과 미술장식 제도의 도입

오늘의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제도' 시행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8, 90년대 개발광풍이라는 계기가 자리 잡고 있다. 70년대부터 고도성장을 거듭해온 우리 경제가 선택한 카드란 수출 드라이브와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이었다. 자본의 축적과 조달이 원활해진 배경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본격적인 도시 개발 및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마침 그 시기는 중동 건설 특수가 끝나가는 시점으로 중동이나 동남아 등의 해외 각처에서 축적해온 대형 토목 및 건축 경험과 기술, 그리고 양질의 유희 노동력과 잉여 장비들을 국내시장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 국면이기도 했다. 경제 성장의 고비 때마다 고도 성장의 동력을 대규모 개발에서 얻으려 하는 한국경제의 고질적 습관이 그때부터 형성된 것이다.

그 결과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은 막대한 폭리를 창출했다. 우리 사회가 막대한 폭리를 건축업자들에게 희생의 대가나 보상도 없이 안겨 주었던 것이다. 대도시에서의 신도시 건설, 대단지 건축 사업마다 승승장구함으로써 부동산 개발만큼의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야말로 부동산 개발과 대규모 건축은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부동산 불패신화를 이어갔다. 문제는 당시 이루어진 상당수 토목이나 건축 사업들이 자연을 황폐화시키는 개발이었으며, 아울러 기능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속성 공사의 산물들이 우리 도시를 잿빛의 정글로 만들어갔다는 점이다.

1) 개발시대 도시의 초상

- ① **자연의 황폐화** 언제나 대규모 신도시, 대단지 주택, 혹은 대규모 타운을 개발할 때는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한다. 때마다 임야나 농지들이 잠식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대규모 자연 녹지나 농지들이 훼손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유지해 온 오랜 공존과 평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더러는 대단위 택지나 공단 부지를 얻기 위해 매립 등의 토목공사가

행해지곤 했는데, 갯벌 등의 자연이 훼손되고 수질이 악화되는 등 생태계가 파괴됨으로써 우리의 아름답고도 넉넉한 자연이 황폐해지는 현상이 의례적인 수순처럼 진행되었다.

- ② **심미적 도시 미관 실종** 도시 개발이란 언제나 콘크리트와 가공석재, 금속 등으로 뒤덮이는 잿빛의 차디찬 풍경을 펼쳐내곤 했다. 도시 대부분의 건물들은 기능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위압적인 직선 중심의 고층 건물들이 숲을 이루곤 했다. 각종 규제가 건축물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필요에 따라 변칙적으로 적용되면서 언제나 용적률, 층수 등이 증가하게 되고, 그 증가분만큼 도시의 경관은 더욱 삭막해져 간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가리는 건물 간의 긴장은 일조권, 조망권 등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 ③ **공동체 해체와 연대의식의 실종** 우리의 개발은 자연 자체를 훼손하거나 혹은 과거부터 간직해 온 삶의 흔적들을 완전히 일소해 버리는 식이었다. 국가 지정 문화재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물며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아닌 보통의 삶의 공간들이나 기록들이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었을까. 공동체의 역사 자체가 자본의 이익 앞에서 아무런 의의를 갖지 못하는 현실은 공동체의 미래에 적지 않은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었다.
- ④ **각종 사회적 병폐** 도시가 비대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 인구집중, 공해, 교통마비, 물가상승 등의 사회적 문제들을 필연적으로 동반했다. 가치관을 상실하거나 현실 부적응의 정신적 장애에서 비롯된 흉악 범죄가 증가하고, 인구가 비정상적으로 집중됨으로써 각종 물가가 폭등했다. 아무리 도로를 뚫어도 거대 도시 교통은 지옥을 피할 수 없으며, 공해가 날로 심해졌다. 특히 개발이 잦은 도시는 개발 자체가 투기나 사행적 행위를 야기하였으며, 투기는 언제나 일반 시민들의 성실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좌절시켰다. 또한 독버섯처럼 각종 범죄와 손을 잡곤 했다.
- ⑤ **지역, 계층 간 갈등** 부동산 개발 붐은 개발의 주체들에게 엄청난 폭리를 안겼다. 개발의 승리자들은 끊임없이 부를 축적해간 반면,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 혹은 주민들, 그리고 개발로 인한 피해자들과 피해지역은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었다. 결국 우리 사회의 지역 간, 계층 간 빈부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개발의 수혜로부터 소외된 계층들은 용산사태에서 보듯 극단의 적대감을 갖고 연대하여 모종의 대결과 반목이 빈발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 개발 이익의 환수 요구

개발에 의한 수익은 대부분 개발자의 생산적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실상 일정한 사회적 기반의 혜택과 정책적, 행정적 특혜에 기인한다. 신도시 개발과 같은 정책의 추진이나, 또한 각종의 인허가를 내주는 행정적 절차 역시 부동산 수익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종의 특혜성 과정이기가 쉽다. 양도세나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의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비중과 세율이 높은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이 대체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누군가는 피해를 당하곤 한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이다. 공사 중의 각종 민원이 되는 인근 주민들에게 끼치는 폐해 및 공해는 말할 것도 없으며,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교통정체 유발, 각종 유해물질 배출 등이 뒤따른다. 요컨대 개발로 인해 발생한 폭리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 따라서 일정 부분 그 이익을 환수하여 개발의 상처를 치유하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가기 위해 모종의 제도적 장치들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개발을 통해 얻어진 비상식적인 폭리 혹은 고수익에 대한 각종 과세, 그리고 토지 일부를 공익적으로 기부하는 기부채납 등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세금이나 기부채납된 토지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환수이지, 그것이 직접적인 피해자들 집단, 즉 시민들에 행해지는 보상은 아니다. 개발 수혜자들이 직접적 피해자 혹은 간접적 피해자들에게 갚아야 할 사회적 부채가 과세 외에도 적지 않다. 바로 시민사회를 향해 문화적, 역사적 차원의 보상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 공동체 정체성 회복을 위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복지를 실생활 공간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되어 왔던 것이다. 현행 제도권 예술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있어, 그것을 뛰어 넘어 시민공동체가 참여하는 보다 새로운 문화예술복지의 확산이 모색된 것이다.

3) 보상으로서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발붐 이후 사회 전반은 필연적으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문화선진국을 사회발전의 목표로 설정하는 공감대가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했다. 바로 서울을

림픽이 주요 계기이자 전환점 역할을 하였다. 올림픽을 전후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비교와 반성, 전환의 모색 등이 수반되고 있었다. 당장 올림픽 이후 도시공간의 성형적 차원이나 재구성 차원에서 무언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는 도시개발과 정비라는 틀에서 개발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즉 공익을 위한 ‘예술에 있어서의 공적 개입’, ‘예술에 의한 공적 개입’¹⁾의 수순 말이다. 다름 아닌 부드러운 자유주의적 개입이라 일컫는 넛지(nudge)이다.

도시 정비 등의 차원과는 별도로 예술작품을 시민 생활공간 내에서 폭넓게 경험하는 다양한 기회를 도시 전체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정책의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일면적으로는 도시계획이나 정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시민생활에 직, 간접으로 복무하는 공익적 미술이 요구된 것이다. 바로 공공미술인 것이다. 물론 미술 일반이 역사적으로 단순한 도정이 아니었듯, 공공미술도 단순한 도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당시 상황으로는 최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대안적이고 정치적, 소통적, 참여적인 유형의 뉴장르 공공미술 자체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공공미술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한 시기로서 도시재생 차원 및 건축물 시공과 관련하여 무언가를, 즉 전통적 미술의 형식으로부터 크게 진화하지 못한 오브제를 설치하는 것만도 획기적이라 할 때였다. 특별히 공익적이라 하더라도 문화예술을 위해 재정을 편성할 여유가 없는 정부에서는 바로 부동산 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개발 수혜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 부채를 갚도록 한 일련의 규제적 개입 혹은 조치가 바로 문예진흥법에 명시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제도’인 것이다.

굳이 유형적으로 말하자면 ‘건축 속의 미술’에 속하면서도, ‘공공장소 속의 미술’과, ‘도시재생을 위한 미술’로서의 다양한 역할이 주어진 제도라 할 수 있다. 결국 건축 허가라는 행정적 절차가 발생시킬 수 있는 예상수익과 또한 건축 자체가 야기하는 반사회적, 부정적 폐해에 대한 일련의 사회적 보상책이다. 건축주 자신의 건축물의 일부 혹은 일정 공간에서 예술적 오브제를 통해 시민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라는 공적 과제를 부여한 것이다.

1) 공적 개입이라는 용어는 「김정수, 예술과 공공행정 : 행정학 관점에서 본 예술과 공공성(공공성, 2008, 미메시스, pp.147~205)」, p.177 참조.

3. 미술장식 제도의 사회적 가치

1) 예술친화적 도시환경 개선

미술장식품 설치제도로 말미암아 기대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작품이 설치됨으로써 도시환경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시각적 기여 및 성과이다. 둘째는 예술작품들이 도시환경 내에서 시민들과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예술과 친숙하고 일상생활에 예술이 깊숙이 침투해 들어감으로써 정신적 윤택함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실 현행법상 설치되는 작품들이 자유로운 연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박하고 삭막한 기능주의적 건축물들에 장식적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 작품 설치제도를 활용하기에 따라 여러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음도 사실이다. 어떤 경우는 건축물과의 절묘한 조화를 보이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통행과 미관을 오히려 저해하는 저급한 작품들이 설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비평적 개입과 심의 절차라는 시스템들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물론 우리가 꿈꾸는 동화 속의 삽화들과 같은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건물들이 널려 있고 온갖 화려하고 친근한 예술작품들이 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숨쉬는 그런 환경은 요원하다. 건축과 디자인, 미술이 함께 조화롭게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의 이상은 보다 큰 예술의 밑그림이 요구된다. 현재까지 미술장식품이 설치됨으로써 일정 부분 시각 환경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도시 구성의 핵심이 되는 건축과 갖가지 인프라들이 함께 개선되도록 하는 큰 그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미술장식품이라는 장르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전통적 조각 작품들이 단순히 옥외로 나오는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는 단계이다. 최근 건축 관련 기업 간 품질 경쟁이 미술장식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다 높은 예술성과 디자인 품질을 위해 법정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작품설치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이러한 추세로 말미암아 미술장식품의 양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엔 단순히 옥내로부터 옥외로 외출한 개념이었던 작품들이 이제는 도시 내 취약 장소나 부위를 오히려 미적인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는 디자인의 성취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건물의 주변에 있는

용벽, 냉각탑, 환풍시설, 주차타워, 계단 등의 시설을 기발하고도 산뜻한 예술의 현장으로 변모시켜 대중의 사랑을 받도록 하는 사례야말로 주목해야 할 내용들이다.

미술장식품 설치가 도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치장한다는 의미에서도 가치가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도시 시민들의 내면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중시될 수 있다. 도시 생활 자체를 항상 예술작품과 가까이 하는 예술 친화적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갖는다. 거리의 정류장이나 벤치 하나도 단순히 기능적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작가의 기발한 창의력 의해 만들어진 작품의 것으로 대체될 때 주는 만족감은 삶의 질 자체를 결정해 준다.

특히 미술장식품류의 진화는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랙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권장하며 시민들의 행위 자체가 예술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는 작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또한 하이테크 미디어를 도입한 작품들의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 역시 많은 것을 시사하는 유형으로 부상하고 있다. 작품들 자체가 끊임없는 소통의 매체이면서도, 우리의 발전하는 기술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안으로는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첨단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함과 동시에 밖으로는 대외적인 과시적 효과까지 거두는 성취물이다.

2) 문화예술관광 자원의 축적

우리의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제도 시행이 15년 정도 지속되어 온 동안 작품의 양적 축적이 상당한 수준이다. 대도시의 도심에 있는 어지간한 대형빌딩들이 옥내외에 갖추고 있는 작품들의 수량이 통계적으로 정확히 잡혀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신뢰할만한 집계나 데이터 베이스도 2000년대 접어들어서부터 이루어졌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심의 건수가 2,470여건이며, 금년까지의 자발적인 설치 수량까지 감안한다면 3,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

이런 작품의 보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 이렇게 축적된 자원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2) 서울특별시 미술장식품 심의 건수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심의건수	158	138	204	389	453	386	314	238	192	2,472건

게 활용해야 하는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과제이며, 또한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도 중요한 사항이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 주위에 축적된 자원을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의 관광 안내서에 온갖 것을 수록하면서도 랜드마크가 될 만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지도 하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우리의 문화전략의 현실이 그러하다.

우리는 공공미술의 롤모델을 일본 도쿄의 롯본기힐이나 다치가와(立川), 독일의 뮌스터, 미국의 시카고 등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들은 그야말로 특정 지구나 장소만을 중심으로 조성된 것들이다. 우리처럼 전역에 예술작품들이 편재하는 환경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경우는 국내 작가 중심인데 반해 외국에서는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작가들의 것이 많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의 미술장식품으로 조성된 도시환경은 동경도 다치가와시의 ‘파레-다치가와’와 유사한 데가 있다. 파레-다치가와는 90년대에 미군이 주둔했던 땅을 개발할 때 일정액을 기금으로 하여 지구의 거리들을 도시갤러리로 꾸몄던 것이다. 주로 작품들이 광장이나 건물의 앞에 위치하여 우리의 미술장식품과 유사하게 노출되어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건축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장소면에서 보다 융통성이 있어서 거리에서의 연출이 자유롭고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이 용이하도록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관광효과보다는 시민들의 예술친화적 생활에 역점을 둔 것이지만, 그들의 진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의 많은 작품들이 롯본기힐의 작품들과 함께 공공미술의 롤모델로 널리 소개되고 있다.

롯데기힐즈처럼 인위적인 도시환경을 보다 치밀하고 쾌적하게 조성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들도 우리에게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지만, 일상생활 자체를 예술과 접목시켜 예술의 낙원이라 일컫는 예술관광지로 조성한 나오시마(直島)의 경우도 우리의 환경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오시마는 거장 안도 다다오의 신비감 넘치는 기념비적인 작품 ‘지츄미술관(地中美術館)’과 굴지의 교육그룹 베네세가 설립한 아트하우스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는 곳이다. 하지만 관람자들의 상당수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보여준 소박하고도 기발한 예술적 연출이 돋보이는 ‘집아트프로젝트’에 더 매료되곤 한다. 바로 이런 모습은 실생활에서 예술과 친근하게 살고 있는 모습 자체도 볼거리가 되는 특별하면서도 누구나가 꿈꾸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현재 시마다 전역에 작품들이 산재해 있는 모습은 흡사 유명한 독일 ‘뮌스터(Münster)

조각 프로젝트'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다양한 오브제 조각을 시 전역에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도시갤러리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예술체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문화관광 효과를 거두고 있는 뮌스터의 도시갤러리는 결국 안양시나 부산시가 충분히 능가할 수도 있는 수준일 수도 있다. 문제는 우리의 공공미술 전반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따로, 미술장식품 프로젝트 따로'라는 데 있다.

이렇게 축적된 미술장식품들은 장차 문화제가 된다.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든 문화재로 남기 마련이다. 이렇게 축적된 우리의 문화재들을 어떻게 볼거리로 가꾸어가느냐를 고민해 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조형물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방식으로는 문화관광 등에 활용할 자원이라 하기 어렵다. 광장, 공원, 거리, 랜드마크, 예술건축, 기타 명소 등과 연계한 조직화가 우리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는 정책의 모색도 절실히 요구된다. 이미 주어진, 또한 앞으로도 생성될 미적 자원의 다각적 활용을 위해 여러 가지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3) 시민사회의 우호적 반응

미술장식품 설치제도의 시행역사가 이미 15년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그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여기엔 전문가 집단이나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사회의 반응이나 입장을 중시해야 한다. 객관적이고도 전면적인 조사에 근거한 통계와 분석이 사실상 없는 가운데 지나치게 참여한 이해관계만이 부각되었던 것이 그동안의 논의 내용이었다.

물론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그 양상과 유형에 따른 표집이 한결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로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작품과 일반 상업용 건물에 설치되는 작품이 표현양식이나 재료 등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도시 규모, 지역, 시행 및 시공사 규모와 관심도, 설치 시기, 설치 작가 등에 따라 상당히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조심스러운 것은 이해관계에 따라 설문 결과들은 얼마든지 설문자의 의도에 따라 유도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전면적인 설문은 아니라 하더라도 비교적 이해관계를 떠나 순수하게 학구적으로 접근한 연구 분석들을 참조해 볼 수는 있다. 특히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위논문들에서 설문 조사와 분석의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환경조각 혹은 환경조형물이라는

주제로 연구된 수십 편의 석사학위 논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 편의 박사학위 논문들에서도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설문 조사들을 제시하고 있다.³⁾

주목할 만한 것은 전문가 집단이나 일반인들 모두 대체로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특히 일반 시민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도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의 설문과 측정이 실시되어야 함을 전제하면서도 이 연구 결과들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할 것 같다. 많은 연구자들의 산발적인 설문 및 통계들이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이 제도가 지금까지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책의 줄기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의 시행을 통해 노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적지 않다. 무수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된 문제점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나치게 시민들의 의견이나 반응들이 무시된 채 전문가 집단의 취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결정될 문제가 아님을 또한 시사한다.

4) 창작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진흥

예술의 자유로운 창조력이 사회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과 합의는 이제 선진적 사회의 기본적 요건이다. 예술은 ‘좋은 것’이라는 기본적 전제에 의거하여 통제가 아닌 기본적인 보호와 고무책은 오히려 장려되어야 옳다. “예술이란 사회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여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⁴⁾이라는 점에서, 나아가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이 사회적 생산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이다.

현대에 접어들어 작가들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좋은 사례로 손꼽히는 것이 미국 노동진흥청의 연방예술프로젝트(Federal Art Project)이다. 1930년대 뉴딜의 일환으로 예술가들의 일자리 및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공공사업을 확대했던 사례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극단을 설립한다거나, 갖가지 미술, 디자인 사업을 전개하여 작가들의 창작욕에 동기 부여를 하는 것 역시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은 다른 여타의 생산 못지않게 생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다수의 논문들이 긍정적인 설문결과를 밝히고 있다. 특히 참조할 만한 문헌들이 학위논문들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손문호, 공공디자인에서 환경조형물의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동서대 박사논문, 2007.」, 「김일룡, 공동주택단지 환경조형물 설치의 기본지침을 위한 연구, 계명대 박사논문, 2007.」

4) 김정수, 같은 책 p.178.

우리나라의 미술장식품 설치제도가 시행되었던 것도 바로 이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미술계가 직접적인 수혜를 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경제적으로 작가의 생활이 윤택해진 것 역시 사실이다. 작가들이 많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창작의욕과 창작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미술장식품 설치제도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설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⁵⁾

물론 특정 장르로 편중되고 있는 현실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탈법 사례들로 말미암아 이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을 받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창작의욕과 기회의 신장이 가져올 큰 방향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술하듯 이 제도의 시행은 작가들이 다양한 형태의 창작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더러 특정 장르 편중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기술적 차원의 상대적 수치 문제이며, 일단은 많은 작가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또한 우리의 미술이 디자인과 함께 우리의 사회와 경제, 과학 및 기술,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와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맺고 있다는 사실도 미술장식품 설치제도의 효과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장르 편중 속에서도 창작에 필요한 각종 예술 인프라들이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까지 창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술장식품 한 건이 시행될 때 관련 산업과 유관 팀이나 인력들이 상당히 폭넓게 협업하게 된다는 점이다. 조경, 조명, 주물, 석재가공, 그래픽, 모델샵, 운송, 설치 등의 협업 외에도 코디네이터, 모델링 어시스턴트 등의 실무 전문직들의 직종들이 다양하게 발전해 가고 있는 현실 역시 이 제도의 성과라 할 수 있다.

4. 미술장식 제도의 과제

1) 보다 큰 틀에서의 방향

5) 월간 퍼블릭아트, 2006년 10월호(창간호 특집설문) pp.39~40. 10년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 부정적 입장보다 근소하게 앞서며, 특히 존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보완이 필요하되 존속되어야 한다' 는 응답이 66%에 달했음.

우리의 도시환경이 미술장식 제도 하나로 도시의 미관이 완성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술장식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시행상의 규정들이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도시는 건축과 디자인, 미술이 유기적으로 협업을 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 먼저 건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아울러 디자인이 짜임새와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미적 효율을 가지게 하고, 미술은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단계에서의 소통과 향유를 제공하는 큰 틀이 요구된다.

건축, 디자인, 미술이 서로 각기 다른 코드와 재정으로 분업화될 것이 아니라 협업을 이루어야 한다. 건축과 디자인, 미술 모두가 분야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기존의 미술장식품 설치제도 외에 많은 공공미술의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재정이 확충되어 종합적인 동시대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칫 나타나기 쉬운 분야 이기주의, 혹은 밥그릇싸움이 재연되어서는 곤란하다.

한 가지 부연할 것은 오늘의 도시가 안고 있는 중대한 약점은 지나치게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 중심의 도시이기 위해 비움의 전략과 실천이 절실하다. 근대 도시의 특성은 채움이었지만, 탈근대의 목표는 채움과 비움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도시를 비워 가느냐의 문제, 결국 도시의 채움과 비움을 조화시키느냐의 과제는 우리의 미술장식품 제도에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이는 미술의 과제이기 이전에 도시정책의 과제이다. 다만 미술이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더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2) 신규작에 대한 유연한 행정

우선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련한 규정들이 대체로 유연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물론 편법과 탈법적인 시행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규제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경직되게 운용되고 있는 공간적 제약이나 시간적 명시는 도움보다는 제약으로 작용하기 쉽다. 행정적 측면에서 공간적으로 지나치게 건축물의 대지경계를 융통성 없이 고집한다거나, 설치 일정에 대해서도 경직되어 있다. 대부분의 건축은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한 고려가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접근하며 색다른 즐거움을 주기 위한 장소성의 탄력적 운용을 모색해야 한다. 건물 주위의 공개공지나 보도, 자투리 공지, 그밖에 공간들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작품들의 수준이 낮은 경우는 대부분 비용과 관련이 되며, 그 비용이 탈법적으로 집행되어 작품에 지장을 주는 경우와 실제로 규모가 작은 건축물의 경우 법정 금액이 적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 작품의 내용이 빈약해지는 경우로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해 시정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해결책이 없다. 따라서 법정금액의 산출 결과가 일정액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면제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기존 작품들에 대한 정비

현재 미술장식 제도 시행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어떻게 유지 보수 및 재구성과 정비를 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한 과제이다. 미술장식 제도의 부정적인 시각 속에는 바로 이러한 유지 보수가 원활치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 지금까지 법령에 의거 설치된 작품들이 엄청난 수량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후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손망실된 것도 적지 않으며, 또한 상가의 경우는 거의 없애고 싶어 하는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이렇게 작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데는 건축주나 시민들의 의식수준도 문제지만 애당초 공간이나 시간의 융통성이 주어지지 않아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요인으로보다는 부담스런 장애물로 놓여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는 건축주들의 요구나 동의가 있을 때 위치 이동이나 작품 변경 등에 대해 폭넓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새로운 장소를 원할 때 기존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위치에 대해서도 그것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해당 기관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들이나 건축주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지를 선정하여 리사이클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경기도 부천시 가 한 때 이러한 공공미술 리사이클링을 실시한 사례가 있었다. 건축물이 입주자나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변경 내지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공공성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것이라면 수용하여 탄력적으로 제도가 운용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처리는 작품의 질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과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변수들을 불가피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5. 마치는 글

미술장식품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유산처럼 이어받은 삭막하고도 우울한 도시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삭막하고도 피폐한 도시의 환경을 만든 이들은 개발의 불을 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술장식품 설치제도는 그러한 폐해를 희석시키고 도시를 보다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절박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회 보상적 차원의 미적인 사회안전망이 언제나 경제 논리에 휘말려 이 제도를 위협하고 있다.

미술장식품은 정서적, 정신적 심미적 장애인을 위한 건축적 설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규제라고 하여 그것이 가지는 창조적 가치마저 매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제도는 미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제도 본연의 취지가 위협 받지 않기 위해서도 온전한 사회적 창조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예술이 우리 사회에서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시민들에게 심미와 정서, 꿈과 상상력을 선물로 주고, 아울러 그것이 시민사회 밖으로 새로운 재화를 창출할 수 있는 마술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과 관련한 제도를 규제로 보기보다는 창조로 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우리 미술 가운데 어떤 재화 창출의 가치를 가진 것이 그리 많지는 않다. 그 가운데 오늘의 미술장식품들은 무한한 잠재력에 묻혀 있는 숨은 진주와도 같은 것이다. 먼 훗날 문화재가 될, 아니 현재도 문화재로 취급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다.

공공미술의 새로운 실험, 도시갤러리

이광준 (기획자, 도시갤러리 전 책임큐레이터)

1. 도시갤러리 소개

2006년 10월 문화를 도시 경쟁력의 핵심으로 하는 컬처노믹스 전략에 따라서 서울시 문화국은 ‘문화정책과 공간정책’을 결합하는 공공미술의 대상지를 연구할 팀을 먼저 구성하였다. 공공미술 기획자인 박삼철, 최소연, 송현애, 경기대 건축대학원 안창모 교수 등 4명이 초기 연구 작업으로 2008년도 도시갤러리 사업의 기본적인 대상지에 대한 틀을 그렸다.

2006. 10 ~ 2007. 12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기본 계획 연구 (연구자 4인)
2006. 11. 15	공공미술추진위원회 구성 (30인 : 당연직 5인, 위촉직 25인)
2007. 1. 5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기본계획 확정 (공공미술위원회)
2007. 2. 1	도시갤러리 추진단 구성 (전문가 7인)
2007. 3. 9	1권역/캠페인 공모설명회 (도시갤러리 추진단)
2007. 3. 30	2권역 공모설명회 (도시갤러리 추진단)

2007년 “도시가 작품이다”로 추진한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는 서울다운 장소, 시민들의 향유하는 장소를 목표로 했다. 예를 들어 도심 권역만 보자면 서울시청에서 시작하여 덕수궁 대한문, 덕수궁 돌담길, 정동 로터리, 정동길, 새문안길을 거쳐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까지이다. 이 권역은 덕수궁이 개화기에 좁아지면서 생긴 공간으로 역사적 향취가 나는 길, 담, 오래된 나무들이 풍부하여 아는 이들에게는 산책 코스로 이용되어 왔다. 서울시립미술관, 정동극장, 난타전용극장, 서울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등 문화예술시설이 곳곳에 있는 ‘아트벨트’ 이자 개화기에 만들어진 근대건축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

화 공간' 이기도 하다. 관람이나 산책을 나온 서울 시민들은 덕수궁-정동에 있는 공공미술 작품을 보며, 작품을 매개로 해서 근대기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유와 휴식의 장소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성을 만들려고 했다.

예술도시 서울을 목표로 기능적 공간들로만 발전해온 서울의 공간을 서울다운 장소, 그 장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작품을 곳곳에 만드는 작업이 다소 늦었지만 서울시의 정책에 힘입어 시작하게 되었고, 다양한 실험들을 할 수 있었다.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의 예술적 성과는 좀 더 시간이 흐른 뒤 비평적으로 찬찬히 들여다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먼저 이 프로젝트의 사회적 의의를 보기로 한다.

첫째, 도시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면서 각각의 공간이 갖고 있는 장소성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 예술의 중요성을 행정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07년에는 캠페인사업과 기억과 기념, 예술과 생태, 인프라스케이프, 장소성 강화 등 다양한 공공미술의 새로운 실험들을 했고, 벽화만을 공공미술로 생각하던 행정의 인식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 시민참여가 없는 공공미술의 한계를 절감하고 2008년에는 장소형 공공미술과 커뮤니티형 공공미술 두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예술가 자유 제안 뿐 만 아니라 북촌아트벤트와 같은 하나의 넓은 영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장소형 공공미술 접근, 예술과 기술, 예술과 시장, 대학 및 지역공동체, 지역에서 오래된 큰 나무 프로젝트(One Tree Park), 공공 시장, 동네 예술가 등의 커뮤니티형 공공미술에 대한 실험들은 행정이 공공미술에서 시민들이 참여가 중요함을 깨닫게 하였다.

둘째, 건축물 미술장식법에 의한 미술장식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을 실험을 했다는 점이다. 미술,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인문학 등 인접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갤러리 심사위원회가 작품안을 선정하였고, 작품안을 심의할 때 기존 미술이 조형성만 강조하는 것과 달리, 공공성(25%), 장소성(25%), 조형성(25%), 예술성(25%) 등을 함께 고려했다. 추천 및 심사위원을 다양하게 하고 심사기준을 다원화한 만큼 새로운 작업들이 선정되었다.

셋째, 공공미술에서 장소특정성이 중요하고, 공공미술 작품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하는가가 중요한 만큼 2단계 과정을 통해서 작품의 질을 높이려 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심사 방식이 시각이미지에 근거해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기업적 시스템을 갖지 않고는 공공미술

작품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만큼 1차 아이디어 심사는 아이디어와 개념구상과 작가의 작업 경향을 참고로 하고 3배수로 작가를 선정한 뒤, 2차 실행 계획을 거쳐서 최종 작품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1차 심사와 2차 심사 사이, 최종안 확정 후 계약하는 과정 중간에 이루어지는 전문가 및 행정 퍼블릭 샷은 아이디어 제안작의 수준을 높이는 과정, 법적, 행정적 제약에 대해 검토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높이는 과정이었다.

넷째, 공공미술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를 고려하고 시민참여를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이다. 단기간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집중검토회의(public charrette)는 많은 한계를 가졌지만 1차 경쟁을 거친 작품을 시민들뿐만 아니라 도시, 건축, 디자인, 미술 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함께 작품안을 검토하였다. 시민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의 필요와 요구와 작가의 작업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과정을 창출함을 통해서 일반 공모가 갖는 열린 구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과정이다.

다섯째, 건축가 디자이너 미술가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공간에 다양한 작가들이 작업을 했다. 도시는 전체로서 느껴진다.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건축, 디자인, 미술의 융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도시갤러리 시범사업은 도시문화와 도시미학에 관심을 갖는 건축가, 디자이너, 미술가 등 다양한 예술가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2007년도만 보자면 30여 개의 공모사업에 260여 팀이 참여해 도시를 상상하고 제안했다.

여섯째, 공공미술위원회-심의위원-추진단-큐레이터 등 다양한 제도적 틀을 실험했다는 점이고 공공미술 기획과 행정의 주도자로서 공공미술 큐레이터십을 만들려고 했다. 장소를 조사하고, 과정을 설계하고, 행정/시민을 매개하고, 아트큐레이팅을 하고, 작품 관리에 대한 매뉴얼의 전과정을 추진했다. 분화되지 않은 초기형태지만 공공미술 큐레이터십의 기초를 다졌다.

2. 도시갤러리 2007/2008 프로젝트

1) 2007년 도시갤러리 시범 사업¹⁾

1) 2007년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도록 참고

기획/컨셉	작품	장소
공공의 기억과 흔적	사라진 돈의문(서대문)의 기억하게 하는 안규철의 ‘보이지 않는 문’ (돈의문), 근대문화의 역사적 유산이 유난히 많은 정동길을 완보하는 디자인 로커스의 ‘멋진 신세계, 꽃이 피다’ 를 도입했다	돈의문 정동길
인간과 생태	레드 안테나의 ‘불광천에 물오르니 미친흥이 절로난다’ 는 지역의 중요 생태공간인 불광천을 문화적, 공동체적 공공영역으로 재설정했다. 서울숲에서는 원인종의 <먼 곳에서 부는 바람>은 서울 숲과 한강을 잇는 조형적 맥락화를 통해 서울이 직면한 여러 단절의 문제를 치유하고자 했다. 청계천에는 김영진의 <부드러운 벽>을 설치했다.	불광천 서울숲 청계천
예술과 공동체	망원·성산동에서는 <예술로 일촌 맺기>를 통해 예술가가 동네에서 작품하고 동네 주민이 예술가가 되는 것을 꿈꾸며 꽃밭주택을 만들며 일촌맺기를 했다. 신림동 공부방 ‘우리자리’ 에서 퍼포먼스 반지하의 공동체미술팀 <공동체 미술을 가꾸다>는 지역의 문화환경을 바꿔 갔고, <인왕산에서 굴러온 바위>는 권력공간이었던 경복궁과 광화문 이 시민들의 일상문화공간으로 되살아나기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민들의 인터넷 참여, 돌쌓기 참여를 통해 조형물을 구성했다. 설치작가 배영환과 서울농학교 학생들의 공동작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수화와 예술이 본질을 포착하고 드러내 보이는 소통 언어임을 확인하는 공동작업을 통해 신체장애를 보는 새로운 문을 열었다.	망원동 동네, 인왕산에서 굴러온 바위, 서울농아학교, 신림동 공부방
인프라 스케이프	도시의 주요 구성요소인 지하철, 지하도, 도서관, 버스쉼터 등의 인프라에도 공공미술이 개입했다. 서울역사박물관과 흥국생명 앞의 버스 쉼터는 건축가들이 만들어낸 아트쉼터로 분위기를 쇄신하였고, 옥수역은 미술 본연의 색을 통해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활력을 더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었다. 중동초등학교와 어린이 도서관의 교문 및 담벼락은 어린이들과 어울리면서도 지역의 색다른 명소를 기능할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되었다. 동십자각 지하보도와 신용산지하보도는 역시 외지고 음침한 곳이 아니라 지역적 서사와 랜드마크를 담아내는 재생의 동굴로 바뀌었다.	역사박물관 앞 아트쉼터, 옥수역, 신용 산 지하보도, 동십자각 지 하보도, 중동초교, 어린이도서관, 흥국생명
장소성 강화	덕수궁에 만든 최병훈의 <자리>는 천연재료를 다듬고 쪼아 일체의 직선을 없앤 벤치로 덕수궁 돌담길의 동지를 재조명했다. 고산자교에서 작업한 정보원의 <Transparence>는 고산자의 발품을 순수기하학으로 재해석하면서 지중학적 표식과 맥락으로 확장된 미술 기능을 보여주었다. 동대문운동장, 합정역, 을지로 역의 환승통로 유희공간을 퍼블릭포토로 전시하였고, 여의도 공원에도 아트 맵과 미디어 아트를 통해 기존 장소의 문화적 자원을 다시 보게 하는 일시적 전시 프로그램이 열렸다.	덕수궁 돌담 길, 고산자교, 동대문운동장, 합정역, 을지로역, 여의도공원
장소성 확장	인사동 입구에는 랜드마크이자 포토스페이스 역할을 하는 윤영석의 <일획을 긋다>, 동대문 동화시장에는 작가와 상인들이 공동작업으로 쇼핑과 문화관광을 유도하는 <동화(童話)-세상에서의 모든 의류 부자재, 동화(東和)에서 찾다>가 설치되었다. 서울시 공공미술의 재배치를 통한 문화, 관광 자원화도 도시갤러리의 중요한 관심사다. 건물에 겹딱지처럼 붙어있어 공공적 역할은 물론,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이 제한되어 있던 흥국생명빌딩의 <해머링 맨>은 거리 맥락으로 재배치되는 한편, 시민광장, 아트쉼터 등이 함께 만들어져 공공미술 특구로 새롭게 제시될 계획이다.	인사동, 동화시장, 해머링맨, 세종문화회관

2) 2008년 도시갤러리 사업²⁾

2008년부터는 본격적인 도시갤러리 사업이 추진된다.

목표는 공공미술을 통해 문화정책과 공간정책, 그리고 생활정책을 통합함으로써 도시를 작품으로, 삶을 예술로 만드는 과제에 도전한다. 두 가지 방향으로 서울다운 장소 만들기 place making와 활력 넘치는 공동체 만들기community building 이었다.

이를 위해 핵심 4대 과업으로

서울다운 장소를 발굴하고 의미화하는 “처소가 아름다운 도시, 서울”

서울 시민들과 공동체의 삶의 활력을 표현하는 “인간적인 도시, 서울”

시민, 예술가의 참여로 도시를 리드로잉하는 “참여하는 창의시정, 서울”

시정 및 도시기반 자체가 캔버스가 되는 “인프라-스케이프infra-scape, 서울”

구분	수	사업
처소가 아름다운 도시, 서울 가꾸기	5	-삼청동 아트벨트 -디자인 서울 : 모바일 큐브 -디자인 서울 : 집 밖의 집 -서울 진입 게이트 조형물 -디자인 플라자 & 파크 아트 웬스
인간적인 도시, 서울 만들기	4	-날아라, 재래시장 -예술, 기술과 손잡다 : 지역 산업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예술가가 달려갑니다 : 이웃/동네활성화사업(2) -Big Tree Park
참여하는 시정, 서울 만들기	4	-서울을 제안하라! : 기성 및 신진작가 자유제안(3) -C.C 커플 프로젝트-미술대학+지역공동체(3) -서울을 올려라! : 기단 프로젝트(7) -서울을 낙서樂書하자! : 분필아트페스티벌 -서울 사이트 프로파일링 Seoul Site Profiling : 당선작 없음 -서울 아트 플랜 컬렉션 Art Plan Collection : 未시행 -도시상상 컨셉 마켓 Public Art Concept Market : 未시행
인프라-스케이프 infra-scape, 서울	1	-남산터널 옹벽 예술화사업
계	14	24개 작업(1개 계획 포함)

2) 2008년 서울시 도시갤러리 도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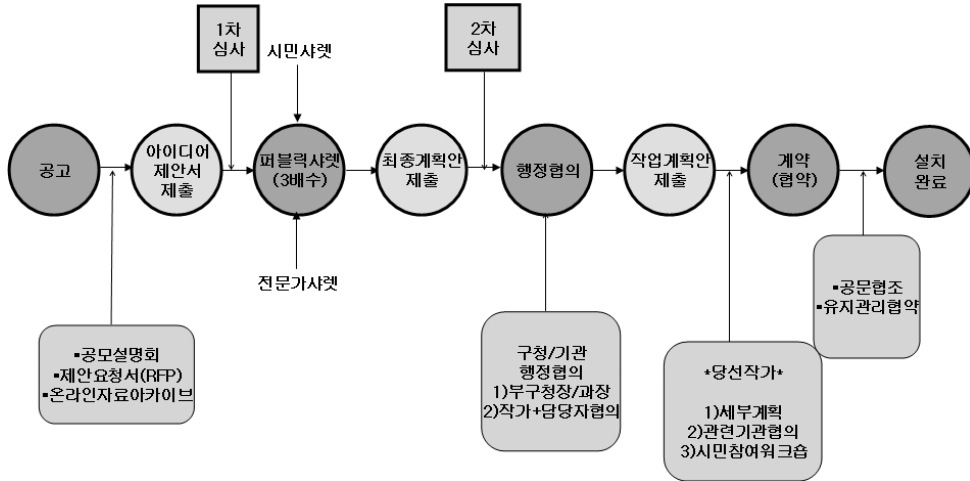
3. 도시갤러리 추진 체계

도시갤러리는 서울시-공공미술위원회-도시갤러리 추진단의 삼원적인 구조에서 추진되었다. 서울시 문화과 문화정책팀(디자인본부 문화디자인팀)은 추진 체계 구축과 예산 총괄 및 행정을 담당하였다. 2007년 서울시 공공미술추진위원회(당연직 5인, 위촉직 25인)는 마스터 플랜 심의 확정하였고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추진대상지 선정,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추진대상지 장소별 작품 컨셉 설정, 작품 제작·설치 방식의 결정, 작품 제작 및 설치 과정 지도, 사후관리,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문과 심의를 요하는 사항 등 기획과 심의를 가지고 추진단이 추진기능을 가졌지만, 2008년부터 공공미술위원회는 심의기능, 기획 및 큐레이팅은 도시갤러리 추진단으로 이원화되었다.

	2007년	2008년
담당부서	문화국 문화정책과	디자인본부 문화디자인팀
추진체	도시갤러리 추진단	도시갤러리 추진단
공공미술위원회	30인:당연직 5인, 위촉직 25인	15인
위원회 기능	기획-추천-심의	추천-심의
추진단구성	단장1인, 큐레이터 4인, 연구원 2인	단장/부단장 2인, 큐레이터 4인
담당공무원	3인	2인
사업수/작품수	30개 사업, 100여 작품	14개 사업 140여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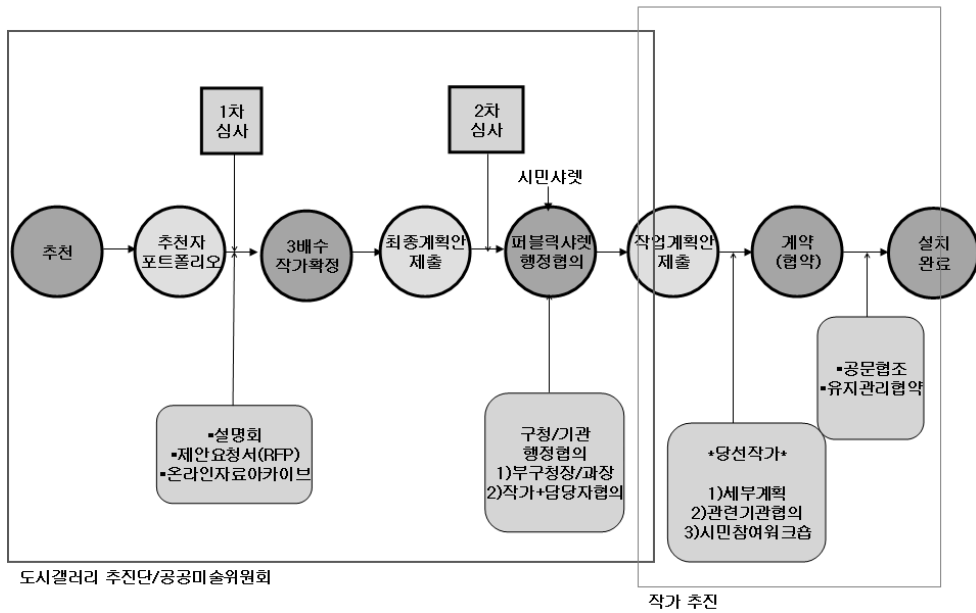
도시갤러리 추진단은 사이트 리서치 및 맵핑, 작품 설치 매뉴얼, 행정적 제도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장소 연구, 제안 요청 및 심사 과정 디자인, 퍼블릭 샐릿 구성, 실행 큐레이팅 등의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퍼블릭 샐릿은 추진단 1인, 전문위원 4인, 시민 2인, 작품설치 관련 행정담당 1~3인으로 구성했다. 퍼블릭 샐릿의 준비과정에서 각 사이트 담당 큐레이터는 1차 샐릿은 과업에 대한 재확인, 공공성 및 공간성에 대한 개념 확장 및 심화, 행정적 제약 요소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 확대, 시민들의 인식 및 욕구, 정서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었다. 2차 샐릿은 공공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검토, 예산에 대한 심층 검토, 법적, 행정적 제약 집중 검토(문화재 관련 한 경우, 현상 변경 심의 위원 참여 고려)등이었다. 작품 선정 과정은 행정들과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공모와 지명경쟁 방식으로 주로 추진되었다.

〈일반공모 추진절차〉



구분	내용	비고
공고	-공모 설명회를 위한 공고	
공모 설명회	-공모 대상지 배경 자료 및 작업 권고 사항 제시 -현장 설명회와 공모 워크숍 병행 -일반공모, 지명공모, 위촉 등 유형별 방식 배분 -질의 및 응답	
1차 제안	-공모에 기반을 둔 개념 제안 -아이디어 드로잉, 컨셉 설명(공간 분석 및 공공미술의 의미 설정 필수 포함), 기본 설치안 등 3요소 중심	아이디어 제안
1차 심사	-1차 제안된 안을 대상으로 한 심사 -사업별 3개 안(작가/팀) 선정	공미위 심사위원 구성
퍼블릭 샤렛 (public charrette)	-사회적 필요와 공공미술의 정신을 바탕으로 3개 선정 안에 대한 토의, 수정, 심화, 의미화 -[선정작가] + [전문가 그룹: 건축가, 미술이론가, 디자이너, 인문학자] + [이해그룹: 서울시, 관할 구청, 지역대표] -작품안 설치 계획에 대한 서울시 및 관계기관, 법규 조정	추진단 샤렛 전문가 구성
2차 제안	-퍼블릭 샤렛 협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2차 아트 플랜 작성 및 제안	
2차 심사	-아트 플랜 3개 안에 대한 심사 -최종 당선작 선정	1차 심사위원과 동일
전시	-사이트 분석, 당선 후보작과 샤렛 내용 중심의 전시 -설치 작품에 대한 내용 일반 공개 의미 확보	
계약	-당선작과 서울시의 계약	
제작 및 설치	-작품 제작과 제작 감리 -작품 설치와 설치 감리	

〈지명경쟁 추진절차〉



2007, 2008년 도시갤러리를 추진하면서 좋은 공공미술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좋은 추진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좋은 공공미술 작품이 나온 많은 성공적인 경우는 큐레이터의 방향 기획, 심의, 전문가 샤넬, 행정 샤넬, 작가가 시민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 등의 총합으로 잘 나타났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공미술 큐레이터, 연구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로 나타났다.

첫째, 기획과 행정의 불일치이다. 행정체계와 공공미술 큐레이터가 동등한 권한을 갖는 조직이 아닐 경우에는 상하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장소협이나 사업추진 과정 등 다양한 행정지원 문제에 대한 결정이 전문가의 의견보다 행정의 편의로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에 행정과 공공미술 큐레이터십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으면 대상지의 사업 파트너십 (각 구청/시설 운영 주체) 형성이 어렵다. 이로 인해서 적극적인 호응 활용도의 저하, 혹은 소극적 대상자의 설득 미비가 되고 작품이 설치되는 구청이나 동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다.

둘째, 서울시 도시갤러리의 2년은 업무의 과잉 그 자체였다. 시카고의 경우 한 명의 공공미술 큐레이터가 1년에 2~3작품을 시민설명부터 작품설치까지 하는 것과 비교할 때, 도시

갤러리의 업무는 너무나도 많은 편이었다. 거기에 행정지원 인력 부족으로 정산, 결과보고 등의 업무까지 맡아야 했다. 공공미술 큐레이터십이 필요하다. 공공미술 큐레이터의 자질은 작가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경관에 대한 이해, 도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 장소 연구, 행동 연구, 창조적 행정 기획, 큐레이터 페이퍼 기술 능력, 매개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등 미술관 큐레이터와 다른 매개형 큐레이터가 필요하다. 행정과 예술을 매개하고, 예술가와 시민을 매개하고, 전문가와 예술가를 매개한다.

셋째, 조례에 기반한 조직이나 재원이 기금형태가 아니기에 안정적 공공미술 정책에 기반한 사업계획이 어려웠고 운영예산 지출은 경직되었다. 경직된 예산 관리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었고, 도시갤러리에 관한 시민참여를 구성할 수 있는 예산 구성이 어려웠다. 유지관리 예산도 확보하기 어렵고, 그 주체도 명확해지지 않았다. 유지관리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시스템구축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방법을 찾기는 불가능했다.

넷째, 더 많은, 더 다양한 공공미술 추진체계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다. 캐나다 밴쿠버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심의 과정이 있었는지, 심의 의견이 나뉘었다면 어떻게 나뉘었는지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다. 심의위원회 체계로 한다면 심의위원은 11인 이하로 하고, 2~3년 등으로 해서 전체적인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 큐레이터가 추천/지명/위촉의 방법을 통해서 공공미술 작업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작품이 놓여지는 커뮤니티가 작품을 선정하게 하는 방법, 대단위 계기성 사업의 경우에는 목적성 위원회를 두고 기획/심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다섯째, 공공미술의 지원 및 기반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없다면 공공미술 작품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관리도 안되면서, 시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서울시 도시갤러리에서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공미술 마스터플랜을 세우려는 시도를 했었고, 공공미술 투어 및 시민 공공미술 교육을 위한 예산까지 수립했으나 과도한 일의 양으로 실행을 하지 못했다. 또한, Concept Market과 같이 예술가가 공공미술 아이디어를 서울시에 제안하는 시스템은 2009년 실행할 예정이다. 공공미술DB나 공공미술 아카이브와 같은 기반 시스템의 구축도 필수적이다.

4. 공공미술의 새로운 실험, 2007·2008 도시갤러리

서울시 공공미술은 대도시형 공공미술의 한 사례이다. 기능적인 도시가 만든 삭막함, 혼란함, 딱딱함을 넘어서 예술을 통한 인간적인 도시 만들기가 도시갤러리의 목적이었다. 서울에서 2007/2008년에 도시갤러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도 계속되고 있었다. 도시갤러리도 공공미술이고,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의한 미술장식품도 공공미술로 놓고 이제 도시의 문화환경 내에서 두 작품의 질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도시갤러리는 계기성으로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정틀(서울시 문화국/디자인 총괄본부) 내에서 공공미술 실행했다. 공공미술심의위원회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운영 과정이 다르다. 하나는 법적 근거가 있고, 하나는 없다. 둘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미술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맥락, 공간 맥락, 주민의 내재적 요구, 공공미술 개념을 볼 수 있는 미술,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인문학 등 인접분야의 전문가로 풍부하게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갤러리는 전문적인 공공미술 매개큐레이터가 있고, 미술장식품은 없다. 매개 큐레이터는 미술사, 미학분야의 5년~10년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공공미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장소-커뮤니티-작가-작품을 읽어내는 큐레이터의 역할의 통해서 작품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새로 생성시켜야 할 자리이다.

도시와 인간의 삶을 두고 공공미술 작품, 환경조형물이 있을 때 시민들도 공공미술 작품에 반응하고 즐거워하고 불평도 한다. 영국의 사례처럼 그랬을 때 예술에 열광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예술에이전트가 발전하고, 삶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공공미술 기획이 늘어날 것이다. 경험에 비춰보건대 공공미술 분야는 건축, 경관예술,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과 연결되면서 확장가능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역으로 예술적 창조성이 개발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더 협소해질 수도 있다. 2009년부터 도시갤러리 사업은 서울시 디자인재단에 통합되어 운영된다. 2007년 서울시 문화국-공공미술위원회-추진단 형태에서 2008년 서울디자인총괄본부-공공미술심의위원회-추진단 형태에서 2009년은 (재)서울디자인재단 안의 프로젝트로 통합되었다. 법적 근거나 조례 등이 없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독립적인 공공미술 영역을 만들 수 있는 열린 태도와 창조적 접근의 부족에서 올 수도 있다. 그러

하면 그러할수록 더 협소해질 것이다.

모두가 바라는 공공미술이 되기 위해서 또한 예술가 자신도 풍부해지고, 타자의 삶도 풍부하게 하는 예술작업이 되기 위해서, 도시의 문화환경과 시각환경을 만드는 공공미술 정책으로 도시갤러리, 미술장식, 공공미술 기획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지금 2007, 2008 도시갤러리의 새로운 공공미술 실험에서 몇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공공예술가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공공조각(Public Sculpture), 장소 특정적 공공미술, 커뮤니티 기반 공공미술 작품을 하려고 하면서 장소에 대한 연구, 역사적 이해, 자신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또한 지금처럼 파이프의 끝에서 장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미술이 도시 생산 체계의 파이프의 시작에서 도시계획, 공간, 건축, 디자인의 끝이 아니라 광화문 공원, 북서울 꿈의 숲, 신월정수장 공원화사업,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문화적 도시개발의 파트너가 되려고 한다면 비토 아콘치, 앤소니 고펠리, 자우메 플렌자, 애니쉬 카푸어 등의 좋은 공공미술 작가들처럼 건축, 디자인, 경관, 조경, 퍼포밍, 커뮤니티 아트 등과 대화를 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공공미술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행정 공무원, 일반 시민, 학생들에게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공공건축물이나 도시갤러리와 같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추진과정에서 공공미술 행정의 새로운 정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립현대미술관 2009 미술관 문화행정과 교육에서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공공미술에 대한 9가지 정의”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러한 교육이 다양하게 펼쳐진다면 공공미술의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행정 대상 공공미술 아카데미, 작품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일반 시민들이 문화 생산자로 공공미술 작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에게 공공미술 교육을 할 수 있다.

셋째, 북아현동에 위치한 추계예술대학은 2009년 추계예술대학교 개교 35주년 기념프로젝트로 미술대학의 “골목에서 주름잡기” 프로젝트에 6,000만원 정도의 자체 예산을 지원하여 북아현동 골목과 연계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2008년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의 대학 및 지역공동체 프로젝트가 지속되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대

학생들이 지역과 삶에서 예술을 배울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예술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기금제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 지원, 유지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서울시 도시갤러리는 작품을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유지되면서, 예술가들의 작업이 지속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했다. 장소형의 경우 단일 작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진화가 가능하고, 공동체 기반 공공미술 작업의 경우 공간 지원이나 연속 지원이 필수적이다. 유지관리, DB관리, 아카이브, 모델 전시장 등등 다양한 공공적 토대를 만들 때, 공공미술이 유지될 수 있고, 지속가능하고, 새롭게 다양한 영역에 위치할 수 있다. 법적 토대 마련, 기존의 건축물 미술장식품에 관련된 조례와는 다른 공공미술 조례 마련, 기금을 통한 전문인력에 대한 예산과 유지관리 예산과 공공미술 교육 예산 마련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공미술의 주체는 예술가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민-행정-예술가-기술자-참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작품을 만든다. 공공미술은 여러 가지 관계가 만드는 작품이고, 좋은 공공미술 작품은 그 작품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준다. 우리는 덕수궁 아트벤치에서 책을 읽으며 친구를 기다리고, 보이지 않는 문 돈의문에서 정동길을 바라보고, 인사동의 전경으로 작품을 본다. 이러한 공공미술 작품은 딱딱한 도시에서 흐릿해져가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사이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고, 자연과 사람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작업으로 기능성과 장소성 이외에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변화한 그 출발점에서 공공미술은 인간적인 도시의 지각 매트릭스를 만드는 과정으로서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과 차별화된 자기 역할을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도시갤러리 사례에서 보듯, 공공미술 작품은 하나의 점이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작품과 사람들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행위와 연결되어서 공간이 만들어진다. 밀레니엄 파크나, 배터리 파크에서 보듯 도시계획-문화적개발플랜-아트플랜-건축-디자인-경관예술-조경-디자인-공공미술 작품이 하나의 공간성을 만든다. 공공미술가는 도시를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다.

시,구,군에서 독자적인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37년전 1972년도 문화예술진흥법 첫 제정시 권장사항으로 들어간 건축물 미술장식 법적 조항과 시행령으로 인해 독립적인 체계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 조례의 미비와 사회적 합의의 부족으로 서울시 또한 2007·2008년 도시갤러리의 실험을 공공

미술로 제도화시키지 못했다. 도시갤러리의 성공으로 서울시 행정의 충분한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지 못하고 디자인재단과 통합된 형태의 공공미술로 추진중이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중랑구나 전주시 아트폴리스과의 사업에서 보듯, 다른 많은 시도에서는 도시디자인과에 도시갤러리 사업을 두고 있다. 공공미술의 자기진화와 독립을 위해서라도 건축물 미술장식과 거리디자인장식을 넘어선 공공건축물 공공미술(시카고 1.3%법), 공개공지 공공미술, 문화적 도시개발 공공미술 등 다양한 공공미술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공공미술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 2년이였다.

섹션2

미술장식 제도의 새로운 길 찾기



미술장식 제도, 문제와 대책

서성록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1. 그간의 경과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권장사항으로 시행해오다 1984년에 서울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장식품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아시안 게임과 서울올림픽 개최에 때맞춰 건축물에 미술장식 제도를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에는 대통령 공약 이행지침으로 선정되어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에 미술품설치비용을 1%로 상향시켰고, 다시 2000년에는 민간건축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요량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비용을 1% 이하로 낮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2004년에는 ‘미술장식 문제 개선 및 도시경관 기여’라는 취지로 현재의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 법안은 미술장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미술’을 내세웠고, 이런 ‘공공미술’의 추진체로서 ‘공공미술진흥위원회’ 도입을 시도하였다. 물론 그밖에도 몇 가지 미술장식품 개선을 위한 눈여겨 볼 만한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술장식 심의기능강화, 국가 및 공공기관의 공공미술비용 1% 이상으로 환원 등.

그러나 이 안은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한 채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공공미술진흥위원회’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 위원회에 ‘공공미술에 관한 계획, 조사와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시행’까지 맡김으로써 공공미술과 연관된 일체의 사업을 전담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게다가 개정안의 초점을 공공미술에 맞추었으므로 미술장식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개정안의 폭발력 때문에 대다수 미술인들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개정안이 흐지부지되면서 미술장식 제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면 지금의 미술장식 제도는 원래의 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이 제도는 술한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것 같다. 지금도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어디선가 타오르는 중이다. 도시경관에 이바지해야 할 제도가 거꾸로 시민들의 불만사항이요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환경조각이 주종을 이루는 미술장식은 도시공간의 미관확보에 보탬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상당수다.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곳에 웅색하게 들어선 것, ‘플롭 아트(plop art)’란 지적처럼 주위 경관과 어울리지 않은 것,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 예술품으로 간주하기에 부실한 작품 등등 그 예는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다.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할 미술장식이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셈이며 도시경관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들을 때면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 괜히 미안한 생각까지 든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술장식품을 둘러싼 비리는 미술장식 제도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을 만큼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미술장식품을 두고 건축주와 대행사 사이에 오가는 뒷거래, 대행사끼리의 과당경쟁, 그로 인해 작품 가격하락, 대행사의 지나친 수수료 등은 곧바로 부실한 작품으로 이어진다. 일부 비양심적인 미술인들의 독점과 대행사의 횡포, 시장 왜곡은 이미 한계를 넘어버린 것 같다.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며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미술장식 제도는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미 2006년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미술장식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공모제 도입’, ‘청렴도 측정실시’, ‘심의위원의 엄격한 윤리성’과 ‘구성의 객관화’ 등을 촉구하는 동시에 부패 재발대책이 미진할 경우 ‘미술장식 의무설치제도 폐지’ 또는 ‘설치비용 제한을 작품성 제한으로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또한 기회가 날 때마다 미술장식의 폐지 또는 규정 완화를 주장해왔다. 현 정부에서도 건축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법의 한시적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조형물의 이해관계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미술장식 제도가 최악의 경우 폐지된다면,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나야 한다. 전체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자기 입장만 관철하려고 한다면 모두 패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주로 미술장식 제도의 운영 개선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심의위원제’의 개

선, ‘공모제’ 실시, 대행사의 자격허가제,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재원확충의 문제, 그리고 ‘공공조형물 지원센터(가칭)’의 건립 및 성격 등 그 대책을 알아보려고 한다.

2. ‘미술장식품’ 과 ‘공공미술품’

미술장식 제도가 발효될 무렵만 해도 공공조형물에 대한 의식이 미미했고, 아시안 경기와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현안사안인 도시미관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확한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신축건물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예술도 활성화하고 도시환경도 개선하려는 취지였다.

‘미술장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미술품을 ‘장식품’으로 여기는 미술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미술이 도시나 거리에서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해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대중들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세운다. 공공미술품은 도시의 최전방에서 예술적 감수성을 전하는 전령과도 같다. 그런데도 ‘미술장식’하면 어쩐지 허영기 있는 사치품 같고 고만고만한 장신구를 떠올리게 한다. 명칭부터가 ‘낮은 존재감’을 내포하고 있다. 문제는 ‘미술장식’이 ‘공공조형물’과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술장식’으로 불린다는 데에 있다. 그간에는 이 제도가 있는 자체로 만족해왔지만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공공미술품’ 또는 ‘공공조형물’과 같은 개념으로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술이 건축물에 부착되는 것이 아니라 설사 부착될 경우라 해도 건축과 미술품이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지 장신구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도시공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식이 크게 달라졌고 그들의 욕구 또한 커졌다. 미술인들의 자세도 예전 같지 않다. 자신의 작품이 공공장소에서 사람들과 호흡하며 길동무가 되어 주길 원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원한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생활공간에서 도시인 및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술품을 더욱 가까이에서 감상하기를 바라고 더 긴밀한 친밀감을 나누기를 원한다.

공공미술품은 화랑이나 미술관의 전시 작품과 사뭇 다른 성격을 지닌다. 특정장소에 놓이며, 그 미술품을 원하는 사람이든 원하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조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시장의 미술품과는 구분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나 거리에서는 예술가와 대중의 예상

치 못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아무렇게나 설치해선 안되며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해서도 안된다. 한번 설치된 작품은 손쉽게 이동할 수도 철거할 수도 없다. 장소의 특성을 신중히 고려치 못한 작품은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부담감과 걱정을 끼칠 수 있다.

공공조형물이 대중의 ‘지지’도 받을 수 있고 ‘지탄’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미국의 대표적인 조각가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가 1981년 뉴욕시의 제이콥 제피츠(Jacob K. Javits) 연방빌딩 앞 플라자에 <틸트 아크 Tilted Arc>를 설치하였는데 그의 ‘대표적인 후기 아크 시리즈’로 평가받는 작품이 설치되자마자 주변 건물의 사무원들에게서 불멘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연방플라자 한 복판에다 우람한 추상작품을 갖다놓아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고 그들의 시야를 가로막은 것이 화근이었다.

게다가 ‘녹슨 철의 장벽’ 또는 ‘산업폐기물 쪼가리’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사람들 사이에 돌았다. 실제로 호형(弧形)으로 생긴 이 작품의 표면은 거칠고 투박하여 매력적으로 보이기 힘들었다. 작가도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미술의 기능이라고 생각지 않는다”¹⁾며 주민들에 대한 반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거주자들은 ‘철거’를 원했고 작가는 ‘철거’는 곧 ‘사망선고’라며 버텼다. 논란의 열기가 식지 않자 이 작품의 철거 여부를 놓고 청문회까지 열었는데 122명이 그대로 둘 것을, 58명은 철거할 것을 지지하였고, 결국은 법원에서 플라자의 ‘공익성을 침해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철거되고 말았다.

반면 <베트남전쟁 메모리얼>(1981~83)은 같은 추상작품일지라도 대중의 호감을 산 작품이다. 이 작품의 제작자는 마야 린(Maya Lin)으로 리차드 세라와 같은 예일대학 출신이다. 그녀는 워싱턴 소재의 베트남 전쟁 추모공원에다 시커먼 화강석을 설치하였다. 이것만으로는 그녀 역시 일반의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었지만 그녀는 표면에 광을 내고 그 위에도 월남전에서 희생한 5만7천여명의 사상자 및 실종자 명단을 정성스럽게 새겨 넣었다.²⁾ 세라의 경우 광장을 대중과 무관한 전시장소로 여겼다면, 마야 린은 대중과의 교감 및 장소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고려하였다. 공공조형물의 명암이 뚜렷이 갈리는 예가 아닐 수 없다.

이 사례가 보여주듯이 공공미술품은 특별히 지역민과의 ‘교감’이 중요하다. 공공미술품의 사용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지역민들에게 있다. 미술장식품에서도 그런 인식이 선행되어야

1) www.pbs.org/wgbh/cultureshock/flashpoints/visualarts/tiltedarc_a.html

2) www.geocities.com/SoHo/Square/1371/serra.html

한다. 공공장소가 건물 앞이든 공원이냐 길가냐 수변이든 미술품이 놓이게 되면 그것은 주위 환경과의 조화가 중요하며 더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을 위한 배려 위에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처드 세라의 작품이 ‘조각공원’이나 ‘미술관’, 또는 그의 작품성격에 걸맞는 공간에 설치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공공장소에 작품을 놓을 때에는 대중들과의 소통,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했지만 세라는 그럴 준비가 채 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비단 미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창원 시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시민들의 원성을 산 바 있고, 결국 설치된 작품이 곧바로 철거된 예가 있다. 공공조형물은 작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역민의 권리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 미술가의 권리만 강조한다면 그것의 철거논란을 떠나 왜 그곳에 공공미술품을 놓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게 된다. 작가는 설치장소에 살지 않아 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역민들의 고충은 계속된다. 그런데도 이런 측면이 공공미술에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것 아닌가 되묻게 된다. 공공미술품은 미술가의 창작권리가 우선시되기보다, 거주민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생활공간에 ‘그들을 위한 미술품’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미술품 제도를 논의할 때 우리는 먼저 이런 인식의 전제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공공미술품의 문제는 그런 점에서 작가, 대행사, 건축주 등 이해당사자의 문제에 앞서 ‘거주민의 행복추구’ 및 ‘아름다운 생활공간 만들기’라는 차원에서 접근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술장식 제도를 개선을 논의할 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의 기초 위에서 공공미술품에 대한 선후 문제를 짚어가야 할 것이다.

3. 심의위원 인력풀제

공정한 작품심의를 미술장식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심의를 빈틈없이 시행해야 건축물에 어울리는 미술품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미술품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작품심의회가 철저하지 못한 데도 한 원인이 있다. 벌써 20년 전에 한 평론가는 “지금 서울의 거리는 새로운 미술품을 설치하느니보다 기왕에

설치된 수준 낮은 작품을 숨는 일이 중요하다”³⁾고 걱정적으로 토로한 적이 있다. 이것은 작품심의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지적에 다름 아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 2008년 당해년도 11월까지 273점 심의대상 작품 중 179점이 통과되어 통과율이 전체의 66%에 달했다고 한다. 이 정도라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심의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명실상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철저한 심의로 진위, 예술적 가치, 환경과의 조화, 적합성, 안전성, 도시미관에 끼치는 기여도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안된다.

작가가 심의를 할 경우 인맥에 얽혀 아는 사람을 선정하거나 빙빙 도는 회전문처럼 번갈아가며 당선 작가가 되기도 한다. 작가가 전문가이자 이해당사자가 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이다. 작가를 도외시킬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 수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가가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술장식 제도의 성공여부는 심의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심사 기구를 두어 ‘심의위원 인력풀제’의 도입을 검토할만하다. 말하자면 어느 건축주라도 따로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공공조형물 지원센터(가칭)’에 의뢰하면 해당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심의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미술을 잘 모르는 건물주가 작품을 설치하려고 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대행사에 휘둘리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심의위원 인력풀제에 위촉할 위원으로는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작가들을 포함하여 큐레이터나 비평가, 디자이너, 건축, 공간디자이너 등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술장식품의 특성에 맞게 장르별, 지역별, 특성별로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은행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각 시에는 심의위원회가 공공조형물의 예술성과 가격을 각각 심의하고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의 구성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회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 지역의 미술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인맥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풍토를 감안할 때 많은 폐단을 낳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과 연고가 없는 공정한 인물로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며 이때 ‘공공조형물 지원센터’에서 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것이다. 종래 ‘시 단위’의

3) 이경성, 『현대미의 표정』, 예술지식, 1989년, p.52

심의위원회제에서 벗어나 ‘도 단위’ 심의위원회제도로 확장하되 ‘공공조형물 지원센터’에서는 어느 때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해당 지역에 비교적 많은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현행의 운영대로 할 것을 제안한다. 적어도 2/3는 외부에서 온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4. 공모제 도입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작품선정을 전적으로 건축주의 재량으로 맡겨놓고 있어 언제든지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친분 있는 작가 및 대행사와의 이면계약, 리베이트 등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건축주가 비용을 아끼려고 작가 및 대행사와 은밀한 거래를 하면 아무도 그런 사실을 알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제도의 허점을 틈타 언제 또다시 문제가 터질지 모를 일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작품공모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공모에 응할 수 있고 건축주 또한 알찬 작품을 비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04년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⁴⁾는 조항을 넣은 적이 있다. 개정안이 폐지되기는 했지만 작품공모제는 미술장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된다. 미술장식비용이 2억 미만일 경우 종전대로 하되 2억이 넘을 경우 공모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공모제를 택할 경우 1. 건축주가 경쟁을 통해 더 양질의 작품을 설치할 수 있고, 2.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3. 수의 계약에서 오는 불투명한 거래를 예방할 수 있으며, 4. 참신한 작가들의 참여기회가 대폭 늘어나 실력만이 당락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문제는 건축주가 이런 공모제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공모제의 도입을 정착시키려면 심의회의 시 ‘심의점수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심의점수 가점을 주어 건축주가 능동적으로 공모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모방식도 ‘공개공모’, ‘제한공모’, ‘지명공모’ 등으로 다각화하여 건축주의 입장과

4) 김갑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방안”, 2005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⁵⁾

공모제를 피하기 위해 어떤 건축주는 작품을 여러 개로 갈라버릴 수 있다. 단일 작품이 2억을 넘지 못하게 몇천 만원짜리로 나눠 여러 덩어리로 분리해버리는 것이다. 비용을 줄이거나 번거로움을 피하거나 혹은 모종의 뒷거래를 염두에 두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총예산이 2억이 넘을 경우 작품 수에 상관없이 공모제를 채택할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공모제를 시행하면 건축주에게는 광고, 진행비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된다. 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공조형물 지원센터’에서 공모사실을 미술인들에게 알려주고,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등 공모진행을 행정적으로 도와준다. ‘공공조형물 지원센터’는 서비스 외에 건축주에게 어떤 간섭도 해서는 안 되며, 다만 작품공모를 뒷받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대행사 허가제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현황(2004년 문화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미술장식품규모는 총 712억원, 2004년은 총 699억원에 이른다.⁶⁾ 그 이후의 액수는 파악치 못했지만 적어도 700억 정도 이상은 되지 않았나 추정된다. 2008년부터는 갑작스런 경기침체와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상당 폭 감소했으리라고 예상되지만 어쨌든 미술장식품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임을 알 수 있다.

대행사들이 이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을 놓칠 리 없다. 대행사들은 기존 화랑에서 미술장식품을 취급하는 곳과 에이전트들로 나누어진다. 화랑의 경우는 좀 나은 편이지만 일부 에이전트들의 경우 건축주에게 리베이트를 주거나 과당경쟁으로 낮은 가격에 수주를 하고 그 책임을 작가에게 전가시킨다. 가령 1억에 수주를 받았다면 실제 금액은 8천만원이고 대행사가 알선료와 수수료 명목으로 3천만원을 취하고 작가에게 5천만원만을 분배한다. 이런 경우 작가는 실제 작품제작비로 3천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세금과 아티스트 피(fee)로 사용하게 된다.

5) 윤태건, “계류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와 조정방안”, 2006

6) 김갑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방안”, 2005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외형적으로는 1억짜리를 제작하는 데 불과 3천만원 정도만 재료비로 들어간 미술품을 설치하게 되는 격이다. 얘기를 정리해보면, 작가에게 돌아가야 할 제작비가 영똥한 데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대행사의 배만 불리는 제도가 되고 만 셈이다. 물론 모든 대행사가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대행사 중에는 양심적으로 작가를 지원하며 좋은 파트너십을 갖는 곳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대행사는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위 ‘브로커’로 불리는 일부 대행사들의 얘기다. 그들에게는 미술장식 제도가 한갓 장사수단에 불과하다.

낮은 수준의 작품설치는 일부 건축주의 알뜰한 상흔, 그리고 대행사의 과잉 수수료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몇몇 작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대행사의 입김이 클수록 젊고 힘없는 작가는 대행사 직원으로 전락하게 되고, 작가선택권을 쥔 대행사는 고용주로 군림하게 된다”고 고충을 이야기하였다. 예술진흥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일부 대행사들에 의해 쥐락펴락하게 되며, 이렇게 제도의 취지와는 어긋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행사가 알선을 할 경우 정도 이상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대행사는 정당한 몫을 받아야 하겠지만 과도한 이윤추구로 치달아서도 곤란하다는 뜻이다.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각계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 타 분야 수수료율과 외국의 예를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는 등록된 대행사가 일정 비율 이상의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어느 이익집단에게 유리하냐는 차원이 아니라 이 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서 수수료의 문제 또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미술품 제도가 성공을 거두려면 대행사의 자격 조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누구나 대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는 있는지, 전문업체로서 안목을 갖추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취급하는 곳인지, 비리는 없는지를 꼼꼼히 점검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미술장식 응모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아 대행사 난립을 사실상 방치해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신고제를 생각해볼 수도 있으나 대행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이익을 주거나 제제를 가할 방안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신고제 보다 강한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컨대 무자격자들의 난립과 시장왜곡은 도를 넘고 있기에 자격있는 대행사만 공공미술품 중개를 허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미술품을 취급하기에 소정의 심의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6. 선택적 기금제

일부 건축주는 미술장식품을 탐탁지 않게 받아들인다. 경제도 어려운데 어떻게 0.7%나 되는 비용을 미술장식품에 할애해야 하는지 하소연한다. 작품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딱히 예술 이해도가 없는 건축주들은 이 비용이 과다하다며 폐지를 바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술장식 제도의 부작용을 폐지론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가 도시경관 조성과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있음을 상기할 때 폐지론의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운영상의 과실과 개선에 있지 존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선진국가로 진입하는 관문과도 같은 문화복지 개념을 단념하자는 주장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건축주도 얼마간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뉴욕시의 블룸버그 시장은 공공조형물 플랜을 발표하면서 “거대한 퍼블릭 아트는 뉴욕시를 세계의 문화센터로 만들려는 기획의 일환”이며 “이 작품으로 뉴욕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전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생애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예술적) 경험을 주려고 한다”⁷⁾고 밝혔다. 이제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며 캔버스이다. 블룸버그시장은 스웨덴출신의 아티스트 올라퍼 엘리아손(Olafur Eliasson)에게 뉴욕시의 네 곳에 이색적인 대형 폭포수 작품을 설치하도록 했다. 미술은 우리 생활공간을 풍요롭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시민들 또한 황량한 도시공간보다는 예술이 흐르는 윤택한 공간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발상이다. 공공조형물이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에 일조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아예 도시를 환경친화적인 조형물로 바꾼 예도 있다. 프랑스 라테팡스는 30여년에 걸친 장기 계획하에 세계적인 작가들에게 의뢰하여 공공조형물 60점을 설치하였고, 일본 파레 다

7) Public Art Fund Project 홈페이지 “Olafur Eliasson, The New York City Waterfalls”

치카와는 세계 36개국 92명의 작가들이 만든 109점의 공공미술품을 설치하였다.⁸⁾ 도시계획 때부터 공공미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볼거리가 풍부한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신도시 건설이나 타운의 재개발시 이런 아이디어를 참고한다면, 미래지향적인 도시, 문화센터와 같은 도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서울시는 “서울을 건강하고 인간중심적이며 문화적인 정체성이 있는 도시”(권영걸)로 바뀌기 위해 ‘디자인 서울’을 선포하고 공공공간과 공동건축물 등에 대대적인 공동디자인 사업을 실현에 옮기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에 공공미술을 접목시키는 ‘도시갤러리’란 프로젝트도 선보이고 있다. 미술품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거리에 ‘예술적 감수성’을 뿌리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공공미술이 팡파르를 울리며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는 국면이다.

재원마련은 민간을 통한 경우와 공공기관을 통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민간에서 출연되는 재원을 살펴보자. 미술품장식을 원치 않는 건축주의 경우 0.7%를 공공미술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 이른바 ‘선택적 기금제’의 도입이다. 이것을 강제성을 띤 의무제로 할 경우 사적 재산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선택제로 해야 한다. 그리고 기금을 낸 건축주에게는 세금혜택을 주어 만일 기부금을 내더라도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내는 기금은 현재 특례기부금에 해당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공공미술을 추진할 경우 제도를 따로 마련해서라도 건축주가 기금을 내고도 기꺼이 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공공미술기금을 출연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한하여 이 제도를 적용하되 반드시 그에 대한 세금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선택적 기금제를 택한다면,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굳이 멀리 떨어진 미술관을 가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가까운 도심에서 예술품을 감상하며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에게는 품격있는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풍부한 볼거리로 즐거움을 안겨주며 도시로서는 활력적 이미지 및 참신한 이미지를 갖추게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공공자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문제는 그 일의 주체다. 공공미술품의 기금은 건축주가 내더라도 실질적인 책임은 정부와

8) 양현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적합한 공공미술 제도의 기본방향”,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미술 적용방안 심포지엄, 2006. pp.20~23

지자체가 저야 한다. 왜냐하면 공공조형물은 성격상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문화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게만 공공미술의 책임을 부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공공기관이 건축주가 될 경우, 즉 정부 산하 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그리고 지자체의 건물을 지을 때 비용을 1/100 이상으로 정하고 여기서 공공미술 부담비용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비용을 모두 공공미술기금으로 지불할 때 해당기관에는 아무 것도 들어서지 못하며, 그럴 경우 따로 미술품을 설치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안겨주게 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건축주인 경우 0.7/100%는 자체 미술장식품에 할애하고 0.3/100%는 공공미술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실제로 기금제를 도입한 나라에서는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즉 도로, 댐, 발전소 등 공공건설비용의 1%를 기금으로 납부토록 규정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⁹⁾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간 건축주로부터 조달하는 방안이 어떤가 싶다.

공공 조형물 설치가 사회의 공공 자산의 확보요 문화복지를 충족시키는 수단임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조형물 설치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며,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과 대구, 대전, 인천, 안양, 광주 등지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혹은 공공조형물 보급을 위해 공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7. ‘공공조형물 지원센터’ 건립

미술장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조형물 지원센터’를 둘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는 미술장식품의 심의 때 인력을 지원하고 대행사의 허가 서비스를 해주며, 공공조형물의 진흥사업을 돕는다.

이전에는 공공조형물 기구에 엄청난 권한을 부여했다. 공공미술에 관한 계획수립에서부터 설치작품 심의 및 감리, DB 구축 및 운영, 시도 기구의 업무 지원, 조사, 연구, 교육 및 진

9) 양현미, “공공미술의 제도적 기반:미술을 위한 페센트법을 중심으로”, 『현대미술사연구』 제16호, 현대미술사학회, 2004

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술계에서는 ‘공공미술진흥위원회’가 기획, 집행기능 자체를 갖는 것을 우려하면서 공공미술에 대한 연구, 조사, 홍보, DB 구축에 그 기능을 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필자의 의견도 비슷하다. ‘공공미술진흥위원회’가 공공미술의 추진을 위해 제안된 것이라면 ‘공공조형물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공공조형물을 연구,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다. 불필요한 권한을 대폭 줄이고 공공장소에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외부에 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하고 민간에 문호를 활짝 개방하는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차원에만 머문다. 관 주도형 추진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권력집중은 오히려 사람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조형물 지원센터’에서는 연구, 조사, 홍보, DB 구축 등의 연구와 함께 미술장식품에 관한 사후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일반에게 공개토록 한다. 2004년도 자료에 의하면, 미술장식 총 설치건수는 959점이며, 96년부터 2004년까지 설치된 장식품은 모두 5천 609점에 이른다.¹⁰⁾ 일 년에 평균 천여점 정도가 설치되고 있다는 얘기며, 거리나 도심에서 공공조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의 영향,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초연구가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연구와 조사, 미술조형물 연도별 통계, 장르별 통계, 지역별 통계, 설치미술가(공공미술 포함)의 이름, 작품명, 가격, 국내외 우수사례 등이 각각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조형물 지원센터’는 미술품 기획, 제작, 설치하는 대행업자에 대해 자격증을 발급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한다. 미술중개 기구인 화랑, 미술조형연구소 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미술작가의 경우에도 기획 관리와 관련된 대행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도 자격취득대상에 포함된다. 대행사를 제도화하고 양성화하여 무허가 대행업체의 폭리, 탈세, 과당경쟁을 막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일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하거나 신고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법령을 위반할 시 즉각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공공조형물에 있어 설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유지 및 관리의 문제이다. 아무리 뛰어난 작품이라고 해도 외부에 오래 노출되면 파손 내지 망실, 그리고 표면박리와 같은 문제를 지니게 된다. 전국에 분포된 미술장식품의 수만 대략 1만여점에 이르지만 유지 관리하는

10) 김갑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방안”, 2005

부서가 없다. 청소와 도색, 보수, 복원 등 이 작품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줄 주무 부서를 자체내에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와 용역을 줌으로써 공공 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조형물 지원센터’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제를 실시한다. 한 예로 지원센터는 당해 연도의 ‘베스트 10’과 ‘워스트 10’을 발표한다. ‘베스트 10’에는 올해에 가장 뛰어난 공공조형물 10점, ‘워스트 10’은 가장 인기를 못 얻은 공공조형물 10점을 골라내도록 한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작가의 소유물이라기보다 주민들의 소유물이자 나아가 공공재란 의미가 더 강하다. 그런데 공공조형물은 그것이 지닌 중요성에 비추어 그간 평가는커녕 수수방관해온 느낌이 없지 않다. ‘공공조형물 지원센터’는 연간 DB의 구축과 분석, 이를 통한 백서발간과 아울러 ‘베스트 10’과 ‘워스트 10’을 발표하여 공공조형물의 수준을 높여간다. 이렇게 되면 작가에게는 창작의욕을 자극시킬 수 있을 것이고, 시민들로서는 창조적 상상력을 만끽하고 품격있는 조형물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하나의 제안

오상길 (예술과 시민사회 대표)

1972년 도시문화 환경개선을 위해 마련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건축비의 1%이하를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규정(문화예술진흥법)으로 출발하여, 1995년 의무조항으로 변경된 뒤 2000년 건축비의 0.7% 이하로 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간의 성과와 함께 운영을 둘러싼 잡음이 있어 왔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 대안제시에 앞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공공성 강화는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애당초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였기 때문이다. 그간 이 제도는 공공성에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본말이 전도된 문제점들을 노출해 왔는데, 이 기회에 문제점들을 잘 분석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겠고, 정부도 확고한 실행의지를 가져 주었으면 한다.

필자는 이 제도가 수혜주체인 지역사회(주민)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공성 강화를 논하고 있는 최근에 이르러서도 지역사회의 입장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감이 있어 유감스럽다. 이런 문제가 불미스러운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되고, 제도의 폐지요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

바람직한 목표를 지닌 제도라도 역기능이 더 크다면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경우는 폐지를 논하기에 앞서 그간 발생해 온 문제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후에 제도의 사회적 목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보완이나 개선으로 극복해 가야 할 것인지 판단할 일이다. 제도의 목표가 아직 필요하고 방법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폐지는 부분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 전체에 손실을 요구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발생해 온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폐지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제도를 보완하여 목표에 다가설 기회라고 판단했다. 사실 이 제도의 문제점들은 목표와 무관하며, 운영상의 기술적 보완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제도가 시행착오를 거치게 마련이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폐지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간 발생해 온 문제들에 관한 성찰이 필요하고, 이해당사자들의 갈등도 공공성의 궤도 속에서 풀어가야 하리라 생각한다.

2. 우려되는 공공미술 제도로의 전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지역사회와의 교감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공공영역에 설치된 미술품을 두고 찬반양론이 벌어지는 것도 나쁜 현상만은 아니며, 주민들의 요구로 작품이 철거되는 해프닝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예술적 이상을 좇는 예술가와 문화적 향유권을 지키려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그 자체가 상호소통의 과정이고 문화발전의 필수적인 단계인 것이다.

미술작품은 작가가 생산하지만 그 작품에 공공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이므로 평가는 예술가들의 몫이 아닌 셈이다. 이는 공공성을 표방하는 예술 활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그간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공공성 강화가 공공미술 제도로의 전환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을 우려해 왔다.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를 통해 성취해 가야 할 공공성과 공공성을 표방하는 미술활동 사이의 개념적 혼선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가 지향하는 공공성이란 예술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향유권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 등의 목표 사이에서 찾아져야 할 절충적 가치인 반면, 공공미술이 표방하는 공공성은 예술가의 개별적 가치관과 실천논리에 따른 정치참여 또는 대사회적 주장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편, 예술가의 개체적 성취를 사회가 수용하는 일이 곧 공공성을 부여하는 일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미술은 수백 년에 걸쳐 컬렉션과 미술관 전시들, 비엔날레 등의 미술 제도를 통해 그 공공성을 검증받아 왔다.

이런 맥락에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가 지향하는 공공성과 공공미술 그리고 미술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공공성의 차이를 각기 구별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가 각종 동상과 기념탑 등 주로 역사적 모뉴먼트 미술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공공미술은 전통적인 포스터 및 사회주의 프로파간다 미술, 80년대 민중미술 등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미술의 순수가치 천착이 150여 년에 걸친 역사 경험-미술의 현실참여 경험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고 있음도 참조되어야 한다.¹⁾

따라서 공공미술 제도로의 전환이 어떤 공공성을 목표하는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그것이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미술을 전제하고 있다면, 그것은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비약이자 전도이며, 정부가 특정 성향의 미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집중지원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또 지난 정권의 새예술 정책이나 문화예술계 인위적 권력재편 기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고, 제도가 목표하는 예술적 수월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해 보인다.

3.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개칭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라는 명칭이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미술품을 건축물에 부속된 장식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고, 미술작품이 지닌 예술적 가치를 ‘장식’ 개념으로 격하시킬 수 있

1) 조상광彫像狂(stuatemia) 시대 : 고대 Platon적(이상주의적) 미관에 봉사하려는 조각양식이나 이념을 버리고 프랑스 시민들에게 널리 어필할 수 있는 대중적 풍속주의를 묘사함으로써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민적 재통합을 모색하려는 새로운 열망으로 관전이 아닌 Salon d'Automne, Salon des Independents나 Ambroise Vollard, Drouet, Henri Kahnweiler같은 사실화랑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 이 기류는 점차 이태리, 독일, 러시아의 조각가들로 확산.

이것이 결국 일대 세계의 병이랄 수 있는 ‘조상광’ (stuatemia)의 시대를 연출 함-여기서 앙데팡당을 중심으로 조각가들이 외친 부르짖음이 ‘Il faut être moderne’, ‘Il faut vivre(생명감이 있어야 한다)’ 였다.

문학으로부터 독립해서 삶의 정신을 구현하며 극적 수사가 아니라 삶의 현존을 탐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미의 무관심성의 본성에 관한 탐구에 의해 보편적 인간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희망이 급기야 타의 목적에 봉사하기 위한 조각을 떠나 자유로운 상태를 희구하는 조각의 길을 모색하게 함.

*현대조각의 양식규정과 Modernity의 기초개념 : 19C 후기에서 20C 전기에 이르는 서양조각의 변천을 중심으로, 백문기(조각가), 김복영(철학박사) 1988, 예술원 연구논문

다는 주장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다면 이번 기회에 제도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대안의 하나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혼선의 우려가 있는 “공공미술” 대신 “공공조형물”이라는 명칭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회화나 조각, 설치, 미디어 등 시각예술 전반의 작품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므로 큰 무리가 없고, 제도의 공공적 성격을 명칭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4.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

1) 건축주의 리베이트 관행

현재까지 발생해 온 문제들은 주로 운영상의 기술적 문제들로 인한 파행과 일부 공공조형물들의 예술적 수월성에 대한 의구심에 집중되어 있다. 그중 대표적인 문제는 과도한 리베이트와 대행사들의 수수료가 공공조형물 제작에 심각한 압박을 주어 왔다는 사실로, 제도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음성적 시장논리-과도한 경쟁과 불투명한 금전관계-에 기인해 있다.

일부 건축주들의 리베이트 요구는 작가들 및 대행사들 간의 과도한 경쟁과 맞물려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건축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하는바 크다는 점에서, 제도노력과 함께 공공성에 기여한 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세금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현행 제도로 당사자들 간의 은밀한 리베이트 거래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도 필요하다. 가령, 건축주와 작가가 공적 기구 입회하에 정상적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제작비를 보장하고, 경비의 출납 및 조형물의 시공감리 등을 대행하여 공공조형물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공조형물의 예술적 수월성 제고를 위해 심의 및 감리결과를 항시적으로 공개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문제를 일으킨 건축주나 대행사 그리고 작가에게 공개경고 및 퇴출, 고발조치 등을 주저 없이 실행해 갈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대행사의 역할과 수수료율의 타당성

현재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관여하고 있는 대행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부 대행사들의 순기능을 감안하더라도 수수료의 비중과 업무의 불이행 등에 관한 불만이 적지 않다. 대행사들의 수수료율을 정하고 활동을 양성화시키자는 제안도 좋지만, 제도의 존재이유를 뒤흔들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역기능을 차단하는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상당수의 대행사들이 수주경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건축주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높은 비율의 수수료를 챙겨 공공조형물 제도의 구조적 부실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해 왔는데, 대행사들의 활동과 높은 수수료율을 보장하는 식의 양성화가 과연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대행사들이라 해도 이 제도가 공공성에 기초해 있는 만큼, 리베이트와 높은 수수료가 제도의 기반을 흔들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 기회에 제작비의 30%를 넘어서는 대행사 수수료율의 책정 근거가 무엇이고, 이런 비율의 중개수수료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수수료율은 그간 건축주와 작가 그리고 대행사 간의 암묵적 합의에 기초해 관행처럼 유지되어 왔는데, 이는 직접적 수혜주체인 지역사회의 입장을 배제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담합성 거래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참고로 시중 부동산 거래의 중개수수료는 0.4%~0.5%로 규정되어 있고, 이 중개수수료 속에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변상해야 할 책임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 대행사들의 수수료율과 대행업무 등은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숙의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건강한 대행사들의 순기능과 시장논리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불투명한 관행과 음성적 시장논리가 제도의 공공적 성격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한, 어느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아울러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업무의 대행이 필요한 작가들을 위해 관리기구가 나서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행사들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전문기구의 설치,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 왔음에도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없었던 점이나 발생하는 문제들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제도를 관리할 전문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도는 법적 의무조항으로 강제되어 있는데, 예산이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공공제도를 관리할 전문기구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제도적 맹점이 파행의 원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이에 대한 보완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기구의 설치에 문화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구체화할 문제이므로 자세히 언급할 수 없지만, 권한과 기능 사이의 균형과 효율성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컨대 기구의 권한을 공공성 강화 및 역기능 제어에 한정하고, 건축주와 작가, 대행사 및 지역사회와의 조정 등 기능적 측면을 극대화시켜, 기구의 권력화 및 비대화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와 국내외 공공조형물 사례연구 및 데이터베이스화, 분석 및 평가 자료들의 관리운영 등은 필수적인 기능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구의 연구 활동과 지원서비스는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져 왔던 각종 불법과 탈법, 편법, 담합, 기득권 행사 등 파행의 주요 원인들과 기회의 집중 문제 및 정보선점, 사전 로비 등의 불공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해 줄 것이다.

4) 공공조형물의 예술적 수월성 담보방안

미술계의 공론화

사실 리베이트나 대행사 수수료를 문제도 심각하지만, 공공조형물의 예술적 수월성을 확보해 내는 일 역시 절박한 형편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제작여건을 보완하더라도 그것이 곧 작품의 예술적 수월성 제고로 직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현재까지의 결과로 보아 심의 등 제도적 장치의 강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미술계와 언론의 공론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술계는 그동안 미술현장의 관심 밖에 머물러 왔던 공공조형물 문제를 미술계 내부로 끌어 들여 쟁점화하고, 전문분야의 공식적인 소견개진을 통해 작품의 수월성 제고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공공성의 일정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조형물 제도의 공론화에 기여할 전문 비평가들과 저널리즘을 지원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장치들이 공공조형물의 예술적 수월성 강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공조형물 작가들의 문제

작가는 작품의 예술적 성취를 통해 자존감을 갖는 존재인 만큼, 공공조형물 제도는 사회가 탁월한 예술적 성취를 보여 온 작가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문제는 이런 얘기가 현실성 없는 이상으로 생각될 만큼 주변 환경이 몹시 혼탁하다는 점에 있고, 이 점에 대해 관련 작가들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관행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작가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 제도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사회사업인 만큼 부당한 관행에 순응하기보다 개선에 힘써 함께 극복해 가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제도의 개선과 공론화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은 결국 작가들이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작품을 생산해냄으로써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의제도

공공조형물의 심의는 작품의 예술적 수월성 판단과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권 신장 등 제도의 목표수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심의가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일부 심의 위원들은 현행 심의제도 자체가 부실한 작품들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고, 민원발생 등의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 한계는 이번 기회에 보완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예술작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 자체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있다. 그러나 공공성을 담보로 한 조형물의 평가는 창작품의 경우와 달리 평가의 기준을 어느 정도 객관화 할 수 있

고,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비전문가들의 비중이 많아 전문적 판단이 심의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역사회 의견의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제도의 특성상 전문인들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담이 아닐까 생각한다. 전문가들의 예술적 수월성 판단과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권 보장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일 역시 중요한 문제이고, 심의의 결과 자체도 제도보완을 위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시환경 전문가나 건축가, 디자이너, 주민 등이 심의위원에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평가의 관점을 구체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나 담합을 견제하기 위해 심의위원 수를 더 늘리는 것과 평가점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심의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공개심 의나 심의 후 평가자료 공개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문분야의 심의위원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예술적 수월성 측면만을 평가하여 다른 심의위원들의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5) 공공조형물 설치를 대체하는 기금출연 방안

건축물의 입지조건이나 구조상 공공조형물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기계적인 제도시행으로 인한 역효과를 고려해 융통성 있는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건축주로 하여금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신 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만들어, 출연된 기금으로 공공장소에 공원을 마련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 기금의 용처와 사용방법을 명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단, 일각에서 제기된 기금출연 시 0.5%로의 인센티브 제공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부가 규정을 통해 사실상의 리베이트를 보장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6) 공공기관의 공공조형물

기존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가 안고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가 민간건축주에 대한 의존

비중이 높다는 점이기에 때문에,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비의 1%에서 0.7%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조정이 공공기관 건축물에도 적용된 점은 제도의 운영취지에 비추어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도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공공기관 건축물의 공공조형물 비중을 다시 1%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공공기관 조형물은 공모방식으로 운영되어 상대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편이지만, 작품성보다 단가에 더 의존하게 되는 입찰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7) 건축물과 공공조형물

종종 건축물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공공조형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건축가와 공공조형물 작가 사이의 교감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공공조형물 작가를 건축설계 시점에서부터 함께 참여시켜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적, 질료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과 공공조형물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항간에는 문패 조각, 꺾 딱지 등 공공조형물을 비하하는 민망한 말들이 공공연히 나도는 데, 부분적인 문제들을 일반화하여 전체를 매도하는 오류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생산해 주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비전문가들마저 뛰어 들어 조악한 공공조형물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요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그에 따라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이 기회에 그간의 문제들을 꼼꼼히 살피고 충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마간의 어려움이 남을 수 있고 갈등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필자가 아는 한

이 세상에는 문제없는 제도가 없고 부정적 측면이 없는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내는 일보다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 지혜와 의지를 모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오래 전 나폴리 광장의 가리발디 동상 앞에서 느꼈던 강렬한 표현 욕구와 뭉힌 근교 다하우 메모리얼의 자그마한 유태인 동상 앞에 서서 흘렸던 눈물을 떠올리며, 우리의 정신과 감성을 일깨우는 예술의 고유한 힘을 생각한다.

공공조형물은 오랫동안 우리의 문화적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

건축, 도시, 공공 속의 미술

: 미술장식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하여

배형민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1. 들어가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술과 건축은 적어도 수천년간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예술”, “미술”, “건축”의 개념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그림을 그리고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어 집의 일부를 이루었다. 이 부분들은 마음과 필요에 따라 집에서 떼고 붙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집이 존재하는 이유의 필연적인 일부였다. 그리스 신전의 박공에 새겨진 조각상에서부터 천왕문을 지키고 있는 사천왕상까지, 당시에 예술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예술의 기원과 역사로 보고 있다.

서양의 경우 근대적인 예술 개념이 탄생하는 시점, 그리고 건축에서부터 미술과 조각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초기 자본주의의 발달 시기인 르네상스로 잡을 수 있다. 이젤 페인팅이 회화의 지배적인 형식이 되면서 그림은 건물의 벽에서 떨어져 나와 귀족 사회와 시장 속에서 쉽게 거래되었다. 18세기말 19세기 초 근대적인 박물관과 미술관이 형성되면서 미술은 미술관이라는 물리적인 공간과 제도적인 영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번성하였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미술관 안의 미술이 점차 다변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와 점차가 멀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를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던 아티스트들은 미술관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공의 영역에서 예술의 역할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공공 미술이란 미술과 건축, 미술과 도시, 그리고 미술과 사이버스페이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엮어가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간단한 논문이 이렇게 장황하고 개론적인 건축미술사로 시작하는 이유는 공공영역에서 건축과 미술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단지 특정 소수 분야의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미술장식 제도가 그 동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창의적인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면 예술이 공공의 영역에서 생명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장식 제도가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한다. 건축을 포함한 예술 영역을 개인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 저버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저버리는 꼴이 된다.

그렇다면 건축, 도시, 공공의 입장에서 미술장식 제도를 바라보고 그 개선 방향을 탐색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다. 이 제도를 공공미술의 영역으로 포섭하려고 하는 시도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공공미술이 대단히 넓고 불안정한 영역임을 이해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공 미술은 그간 미술장식 제도가 가정하고 있었던 조각 또는 미술 오브제의 개념에서 탈피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이번 미술장식 제도 개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며 이러한 전제 하에서 미술장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은 건축도시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현안 문제를 필자 나름 정리한 것이다.

2. 건축 도시의 입장에서 바라본 미술장식 제도의 현안

건축의 입장에서 미술장식 제도는 또 다른 하나의 규제로 인식될 수도 있다. 좋은 건물을 만드는데 투입되어야 할 건축 공사 예산이 다른 곳에 투입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이 가장 공공적인 예술이라 한다면 미술과 건축이 공공의 영역에서 접촉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적인 범주를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건축물의 규모와 시설의 성격

현행 미술장식법은 1만㎡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설치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지면적 1,500㎡에 들어선 8층 오피스 상업 건물의 조건과 대규모 단지형 개발 사업의 상황은 개발의 파이낸스, 건축과 건설 과정, 건설비의 규모, 건축의 도시적인 맥락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개발 사업이 아파트 단지이나, 복합 상업 위락 시설

이나, 공공 청사나 문화 시설이나에 따라 사업에서 요구되는 공공 미술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원론적인 필자의 입장을 정리한다면 작은 규모의 건축일수록 기금제 형태로 제도를 운영 하되 건축주가 일정한 지역이나 행정 단위 내에서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간 건축 사업의 단위가 커지거나 대형 공공사업의 경우 미술장식에 투여되는 예산 규모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미술장식이 단지 몇몇의 작가들이 몇몇의 오브제를 여기 저기 배치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다시 말해서 미술장식 제도의 적용 단위가 민간 건축의 필자 단위에서 사업별로 적절한 도시의 지역지구 단위로 커져야 된다는 것이다. 도시의 공공적인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될 때 비로소 미술장식법을 인센티브 제도로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2) 건축과정에서 건축가와 아티스트의 협업 가능성

미술계 일부, 특히 미술장식 작업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건축설계 단계부터 작가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건축주가 “툰키” 방식으로 건축가와 아티스트를 동시에 선정한다는 제안도 있다. 건축가와 아티스트의 협업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건축가와 아티스트 양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지 않는 편이고 아티스트의 의견이 강할 경우 건축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제도의 개선을 계기로 뜻이 맞는 건축가와 아티스트의 협업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3) 건축과정에서 미술장식품의 설치 시점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건물의 준공 시점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건축 설계가 마무리된 이후 시일이 촉박하고 건축물과 안 어울리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미술장식품의 심의와 설치가 건물의 준공 이후에도 가능해야 한다. 미술장식품의 설치 예산을 기금으로 예치 받아 적절한 과정을 거쳐 설치할 수 있

어야 한다. 비근한 예를 건축 과정에서 의무 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조경공사가 어려운 겨울철에는 조경공사비를 예치한 후에 적절한 시기에 설치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4) 건축과 도시 영역에서 장식미술품 설치의 위치

민간의 개별 개발 단위에 따라 작품들이 필지마다 설치되기 때문에 도시적인 맥락 속에서 이러한 작품들이 역할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개발 필지 안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의 필지와 연계된 주변의 공공 영역에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야한다.

5) 기존 미술장식품의 정비와 사후 관리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미술장식품이 개인 필지 영역 밖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면 장기적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미술장식품들을 재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작품이 훼손되었을 때 수리나 교체 등이 요구되는 상황, 또는 위치 변경이나 교체 등이 필요한 상황, 또는 공공부문에서 기존의 작품을 수리하고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6) 미술장식품에 대한 인식과 정의

현재의 미술장식 제도 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작품이 조각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기존의 작품들이 대부분 조각으로 분류되어 있다. 미술장식법의 제도 안에서 설치되는 작품은 수직적인 매스를 가진 오브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한국 대도시의 공공 공간의 경우 자동차 도로는 넓지만 공공의 보행공간이 비좁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유럽의 역사도시의 자랑거리라 할 수 있는 공공의 광장이 없고 민간의 간판과 설치물, 주차 차량들이 이 비좁은 보행 공간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도시 공간의 상황에서 또 하나의 오브제는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예술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미술장식품 제도를 공공 미술로 그 개념을 전환한다는 것은 곧 이러한 오브제 중심의 예술 작품에서 탈피한다는 것을 말한다.

〈장르별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현황〉

(단위: 점)

지역	작품분류										계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	분수대	상징탑	기타	
서울	316	1,229	0	0	0	3	0	0	0	536	2,084
부산	244	561	0	0	2	2	0	0	0	114	923
대구	58	449	0	1	0	13	0	2	7	9	539
인천	115	291	0	1	2	2	0	0	0	85	496
광주	79	214	0	0	0	3	0	1	3	5	305
대전	107	219	0	1	0	4	0	0	0	37	368
울산	32	144	0	0	0	1	0	0	0	15	192
경기	303	1,951	3	2	22	11	0	2	0	128	2,422
강원	12	124	12	0	0	1	0	0	0	13	162
충북	5	134	0	0	0	2	0	0	0	3	144
충남	0	122	0	0	0	0	0	0	0	10	132
전북	19	108	0	0	0	0	0	0	0	15	142
전남	12	71	0	0	0	0	0	0	0	12	95
경북	5	116	0	0	1	2	0	0	0	3	127
경남	43	342	0	0	1	1	0	1	0	3	391
제주	19	37	0	0	0	0	0	0	0	20	76
총계	1,369	6,112	15	5	28	45	0	6	10	1,008	8,598

※출처 : www.publicart.or.kr

3. 마치면서

현재의 법령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이 “미술장식의 설치 여부”를 판명하는 법적 절차 중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 1) 계획안과의 비교를 통한 제작, 설치 여부
- 2)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안전하가의 여부
- 3)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돈 여부
- 4) 안내판 등 미술장식품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반편의 조치 여부
- 5) 기타 공공적 기능에 부합한지의 여부

이러한 훌륭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안에서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는 작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즉, 제도가 예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제도와 정책이 그렇듯이 새로운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아티스트와 건축가, 건축주와 공무원, 정책 결정자와 대중, 다시 말해서, 사회 전체가 예술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번의 제도 개선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합토론

김방희 (제주대 미술학과 교수)

염기설 (예원화랑 대표, 한국화랑협회 감정이사)

김세준 (숙명여대 문화관광학과 교수)

안병철 (서울시립대 환경조각학과 교수)

정준모 (미술평론가)

이영범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김방희 (제주대 미술학과 교수)

앞서 주제발표를 하신 다섯분의 발제자를 비롯하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미술장식 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에 대하여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오랫동안 시행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기 마련이듯이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이 제도의 근본취지를 잘못 이해하거나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서 빚어진 것이다.

문화를 경제적 논리로 보서는 안 된다던가 문화가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어 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예술가들의 창작행위를 국가와 국민들이 장려하고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잣대로 문화예술진흥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제도를 없애서는 절대로 안 되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발제자분들의 의견 중 공감하는 부분이나 우리들 작가로서의 자세에 대하여 우선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작가들의 이해와 반성이 있어야겠다. 앞서 여러 발제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일반작품이 아닌 공공미술로서의 차별성을 이해하고 불특정 대중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기획되고 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과의 조화를 위해 건축설계자와 작품구상과 재료선택 과정부터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초기에 비하여 도시공간을 바라보는 시민의 의식이 많이 향상되었으므로 작가들은 작품구상과 제작에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미술장식 제도 하에서 작가들은 주체자이면서도 약자이다. 엄청난 리베이트와 대행사 수수료를 떼고 총액에 대한 세금도 고스란히 부담하면서도 작품수준이 낮다거나 문패조각이라는 비아냥을 작가가 들 수밖에 없었다.

기왕에 문제제기가 되었으니(오상길, 서성록 제기) 그동안 관행이라고 하며 지나쳐온 리베이트문제, 대행사의 수수료율 문제를 공론화 시켰으면 한다. 과연 대행사의 수수료율이 적당한 것인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대행사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고, 역할도 분명하다. 그러나 공공미술은 이윤보다는 대중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여야 하며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고 건축주가 공공미술을 위해 내어놓은 기금을 보다 나은 작품제작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본다.

공공미술지원센터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서성록 제의에 찬성)

미술장식 제도의 행정지원과 각종 부조리를 방지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작가들로서는 부담이 되나 베스트, 위스트 작품을 매년 선정하여 작가들에게는 설치작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우수작품에는 포상도 하여 건축주들이 관심을 갖고 우수작품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자는 의견에도 동의한다.

끝으로 현재 미술장식 제도와 직접관계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조형물 공모 시 조형물의 설계 및 제작자인 작가가 직접 응모할 수 없도록 한 공모방식은 고쳐져야 한다. 조달청의 일반 공사입찰 제도를 적용하여 건설, 조경, 디자인 산업체에 한하여 응모권한을 주어 결국 작가가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은 부당하다. 공모 작품 심사 때도 작품성 평가 60%, 자격조건평가 20%, 가격평가 20%로 입찰심사를 함으로서 조형물의 수준저하를 야기시키는 것 또한 고쳐져야 한다. 공공조형물의 응모자격 및 심사의 경우 조달청의 입찰제도가 아닌 문화예술진흥법에 준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술장식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및 질의

여러 발제자분들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미술장식품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대부분 공감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수료율의 상한제, 기금제, 대행사의 허가제, 작품의 유지보수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희 화랑협회 입장에서는 일리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배형민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민간 필지와 연계된 주변의 공공영역에도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기금제 문제는, 서성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적 재산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반드시 선택 기금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과도한 세제혜택을 주어 기금 출현을 유도하는 것은 기금제에 대한 목시적 강요가 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오상길 대표님께서도 언급하신, 기금 출현 시 0.5%의 인센티브 제공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서성록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공모제에 대해서는, 절차의 합리성과 형식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여러 우려 또한 쉽게 가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이 절대로 민간 건축물에 설치된 작품보다 결코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주택공사나 공공기관 미술장식품, 지자체 상징조형물 등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작품이 보장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언론을 장식하는 각종 잡음은 오히려 공모와 관계된 것이 많습니다.

또 어차피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주라면 공모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잘못된 행위는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즉, 공모제 도입은 형식적 공모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서교수님께서 언급하신 허가받은 화랑, 조형연구소, 미술 작가 등에 한해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고, 법령을 위반할 시에 즉각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서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오상길 대표님께 한 말씀 여쭙보고 싶은 것은, <공적기구>의 입회하에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제작비의 보장과 경비의 출납 및 조형물의 시공감리 등을 대행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공적기구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작비의 보장과 경비의 출납을 대행하는 것은 건축주와 공적기구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야 가능한 일임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으며,

또한 대행사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업무의 행이 필요한 작가들을 위해 관리기구가 나서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민간 대행사가 정부(또는 지자체)의 관리기구와 사실상 미술장식품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권력과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부기구가 민간영역에 침범하여 결과적으로 민간 대행사가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토론3

김세준 (숙명여대 문화관광학과 교수)

안병철 (서울시립대 환경조각학과 교수)

미술품은 건축물과 정권의 장식물이 아니다

건축물 미술품 장식제도와 관련하여 새삼 논의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 제도가 시행 된지 많은 시간이 경과했고 그리하여 시대와 상황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런 논의는 권장사항으로 시작된 1972년으로부터는 37년 만에, 의무화된 1984년으로 부터는 25년만의 일이다. 그리고 이런 논의의 계기는 당사자들의 전향적인 변화요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경제계의 폐지요구와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에 밀려서 거론되는 것이 현실임을 직시해야한다. 여기에 그간 이 제도가 거둔 성과에 비해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곤혹스럽지만 다시 논의를 해야 이유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 제도 시행 후 조소예술가들은 자연 감소하였고 일부는 건축 장식물을 만드는 업자로 전향함으로써 결국 문화예술의 창달과 작가지원이라는 명분은 사라지고 결국 야합과 리베이트의 관행만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도 재론의 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존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은 여전히 우세하다. 물론 미술인들의 많이 참여한 조사결과인 탓에 시민들의 의견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말이다. 아무튼 시대와 환경의 변화만으로도 이 제도에 대한 건설적이고 전향적인 논의와 검토 끝에 새로운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는 사회구성원 모두 동의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 정립을 위해서는,

‘공공미술’ 과 ‘미술품 장식제도’ 를 통합 총괄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된 공공미술관련 정책들은 서울시에 의해 ‘도시갤러리’ 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공공미술의 개념이 모호할 뿐 만 아니라 소위 지난 30여 년간 시행되어 온 ‘미술품 장식제도’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점을 굳이 찾는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을 가지고 발주하는 것은 ‘도시갤러리’ 가, 그리고 건물을 짓고 건축주가 발주하는 것은 ‘미술품 장식제도’ 가 나누어 맡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목계아래 작동되고 시행된 제도라는 점이다.

사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도시갤러리 사업도 이제는 찬찬히 뜯어보고 평가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술품 장식제도’와는 다른 많은 절차와 과정을 거치도록 한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지난 정부에서 유행했던 공모제같이 이미 ‘짜고 치는 고 스톱’ 처럼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상황이었고 절차만 복잡하게 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전문가들이 공공의 기호와 취미와는 달리 자신들의 미학을 실험하고 실현하는 데 공적예산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미술의 성과는 참여자들의 성향과는 관계없이 그것이 시작된 배후와 동기의 취약함 때문에 그 의미가 반감되어야 할 운명이다. 사실 이 제도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운 문화 권력으로 자리한 정치문화인들이 ‘미술품 장식제도’에 매우 큰 관심을 가졌던 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기존의 제도와 익숙한 미술인들과 그들의 성향과는 맞지 않는 건축주들에 의해 그들의 관심이 외면당하면서 등장한 것이 ‘공공미술’이다. 당시 살아있는 권력들은 뜻대로 되지 않자 2004년부터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미술품 장식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2005년 본격화하였다. 그러나 ‘공공미술’이라는 신조어를 통해 미술품장식제도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간파한 미술인들이 반대함으로써 당시 제안되었던 “▲건축물 미술장식을 공공미술로 개념 확대 ▲기금출연, 시도지사에 대행 의뢰 등 설치 이행방법 다양화 ▲공공기관 공공미술 비용 1% 환원 ▲문화부 내에 공공미술진흥위원회 및 각 지역별 공공미술위원회 운영을 통한 미술장식 심의 기능 강화 ▲공공미술 기획관리자

신고제 도입 ▲공공미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은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나 당시 제안된 개선안은 일부 오늘 발표자들이 제안한 내용과 중복되기도 하고 일부 유사한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선안이 무위로 돌아간 것은 “공공미술진흥위원회 및 각 지역별 공공미술위원회 운영을 통한 미술장식 심의 기능”라는 대목이었다. 소위 위원회를 통한 미술품 장식제도를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문화인들의 저의가 드러난 때문이었다. 특히 ‘문화예술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개편하고 지원예산을 쥐락펴락하면서 자기 편 끼리 나눠먹는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면서 ‘위원회’를 경계하는 봉건적이라고 매도당했던 순수한 미술인들이 반발하면서 꽤 설득력 있는 이 개선안은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마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듯” 말이다.

미술품 장식제도를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자 했던 정치문화인들의 생각은 당시 여당국회의원을 통해 구체적인 법안으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으로 제출되었다. 하지만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염두에 두었던 이 법안은 당시 야당의원이 보다 큰 그림의 개정안을 냄으로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 과정을 보면 결국 미술품 장식제도를 공공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해서 자신들의 지지기반이 되어 준 정치문화예술인들에게 전리품처럼 나누어 주려했던 건강치 못한 의도가 제도개선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술품 장식제도의 개선은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으며 이 제도는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공공미술이라는 제도를 국가와 지자체들이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가운데 시행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공공미술의 진정성과 성과 그리고 그 일에 매진한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없이 그 출발자체가 정치적이었던 때문에 일정량의 성과를 까먹을 수밖에 없는 점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논의는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부터도 자유롭게 토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차제에 개선될 새로운 ‘환경조형미술제도’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상대를 제거하기위해 ‘친일’로, ‘부역미술인’으로, ‘수구보수꼴통’으로 몰아 붙였던 과거의 침울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또는 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정치적 독립과 사업을 하지 않는 매개로서의 전문기관설립

이번 논의에서 거론되고 있는 ‘전문기구’는 필요한 장치이다. 하지만 2005년의 개선안에서도 논의되었던 이 기구가 거부당했던 가장 큰 요인인 과도한 권한과 예산 그리고 정치권에 장악되었을 경우의 폐해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기구는 어떤 이유로도 규모가 커져서는 안 되며 서로 필요한 사람과 사람을 순수하게 매개해 주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한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가급적 이 기관은 자원 봉사자나 재능나눔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개인의 이익이 배제된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기업형태를 띄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2. 민간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도 참여해야

2005년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공공미술진흥위원회’의 사업과 운영을 위해서는 긴급한 자원조달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긴급예산확보와 자금의 확대를 위해 검토되었던 기금으로 납부할 경우 0.5%로 낮추어 주는 방안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비의 0.7%에서 다시 1%로 환원해야 함은 물론 민간 건축주들이 법령에 의해 ‘환경조형미술품’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대신 법령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경우 공사비의 3.16%를 내야하는 신축건물 취득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제반 리베이트를 없애거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설치하는 수동형을 능동형으로 바꾸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매년 전국적으로 잘 된, 좋은 ‘환경조형미술품’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설치 의무자들에게는 고무적인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3. 건물이나 공간으로도 ‘환경조형미술품’을 대체할 수 있게 해야

그간의 ‘건축물 미술품 장식제도’는 미술 특히 조소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여타의 문화예술장르는 소외된 형태로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예술계의 기본적인 창작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신축 건물의 일정부분(1%)을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회에 공여할 경우 ‘환경조형미술품’ 설치를 면해주는 방안도 적

극적으로 생각해볼 문제이다. 그리하여 이 공간을 국가나 지자체 또는 전문기관이 관리하고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해서 문인들의 집필실, 작곡가들의 작곡실, 연극이나 무용단체의 연습실, 미술가들의 아틀리어나 문화예술계 전문비평가들의 집필실로 활용한다면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또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많은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 간의 인간적인 스킨 쉽의 기회가 확대되어 문화예술의 담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건축주들에게는 당장 건축비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환경조형미술품’을 설치해야하는 부담을 경감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4. 문호를 넓히고 전문가를 커미셔너로 선정하는 방법도 도입해야

일단 지금까지의 시행된 제도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미술가들을 위한 제도인지 불분명하게 운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명분은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과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결국은 미술가들의 창작지원을 위한 제도로 의미가 퇴색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매우 편협되게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인데 지역의 경우 건축물이 세워지는 지역의 작가가 아니면 우선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거나 지역미술협회가 판단하는 적정 작품가격심사에서 밀려 결국은 지역작가들만의 경합장이 되었다. 그래서 농담 삼아 분당에 가면 한 조각가의 개인전장소이고, 1번 국도를 타고 가다보면 경기지역은 어느 작가의 조각도로라고 까지 할 정도로 지역작가들에 편중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늘 그렇고 그런 조형물을 보아야 했으며 건축주들은 남다른 것이 아닌 비슷한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다. 따라서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환경조형미술품’은 어느 지역이건간에 대한민국작가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의 작가들에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시민과 국민의 선택권을 한국작가라는 이유로, 지역작가라는 명분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금액이상의 경우 범위를 넘을 경우 전문가를 커미셔너로 지정하고 그와 함께 건축주가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커미셔너는 자원봉사나 재능나눔 자원봉사자로 실비만 제공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영범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1억원 vs 300억원

10,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총 건축비 0.7%를 미술장식품에 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 150만원의 오피스빌딩의 경우 미술장식품에 투자해야 할 예산은 1억원 남짓한 금액이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 11월까지 심의대상 작품이 273점이었다고 한다. 평균 1억원의 개별 건축물 미술장식품 예산을 전제한다면, 1년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서울시 미술장식품의 전체 가용예산은 무려 300억원대에 이른다. 1억원을 개별 건축물에 투자하는 경우와 300억원을 서울의 도시환경에 투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무엇이 제도개선의 나아갈 바인가?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의 명칭의 의미

1972년 시행되기 시작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 제도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영역의 문제에서 발전적인 방향모색이 필요하다.

- 첫째, 미술이라는 영역의 문제 - 도시·건축·미술·조경 등의 협력적 영역
- 둘째, 장식이라는 기능의 문제 - 공공성으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
- 셋째, 미술장식품의 실현의 문제 - 개별성과 집합성의 문제
- 넷째, 제도라는 의사결정의 문제 작가결정과 작품결정 - 건축주, 대행사, 심의제도의 배타적 의사결정체계를 넘어서 일관성의 문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방안

1. 제도 현황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도시문화 환경개선과 미술창작활동 진흥을 위해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신축 및 증축시 건축비용의 1%이하의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도입된 제도(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 1972년부터 권장사항으로 시행해오다 1995년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전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었으나 1997년 규제개혁대상으로 검토되어 2000년에 설치비용을 건축비 1%이상에서 1%이하로 낮춤
- 2008년까지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설치건수는 8,598점이 전국 16개 시도에 구성되어 있으며, 4천7백억원이 설치비용으로 사용되었음

2. 문제점

- 외국은 공공건축물에만 적용되고 민간건축물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미술장식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규제논란이 있어왔음
- ※ 공공조형물 리베이트 미술계 고질 (연합 '07. 10. 1)

- 건축물에만 적용되고 공원, 광장, 도로 등 공공미술이 필요한 공간에는 제도적용이 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미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나 제도 활용 불가능
 - ※ 문화부 아트인시티, 마을미술, 서울시 도시갤러리, 안양시 공공미술 등
- 건축물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방식으로 지구단위 또는 도시 전체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에 한계. 특히 미래 도시의 모델로 조성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제도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를 낳고 있음

3. 제도개선안

-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구분 조항 마련
 - 공공과 민간에 동 제도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공공건축물의 의무 강화
 - (요율 상향조정 : 1%이하에서 1%이상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술장식비용을 산출하는 요율을 1%이하에서 1%이상으로 전환
 -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 적용요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더하여 적용대상 건축물을 결정하는 적용기준을 확대. 적용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확대하고, 연면적 기준 1만제곱미터 이상에서 그 이하로 내림으로써 공공부문의 기여도를 제고
- 민간건축물에 대한 규제완화
 - 민간건축물에 대한 의무제를 유지하되 의무이행방법에 직접설치 또는 기금납부 등 의무이행방법상 선택권을 부여
 - 민간건축물에 대한 설치시 용적률 혜택 등 실질적 인센티브 부여 검토
- 공공장소를 적용대상에 포함
 - (공공장소 설치 권장) 지자체가 관장하고 있는 공원, 광장, 가로 등 공공장소에 대해 공공장소를 조성하는 비용의 일정한 비율을 공공미술에 사용하도록 권장
 - (매칭펀드제도 운영) 공공장소 설치 권장과 함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미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매칭펀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트인시
티사업 수행시 지자체의 지원요청이 많았음)

○지구단위 공공미술 조성 촉진

- 문예진흥법 제8조 문화지구의 지정 관리에 있어서 공공미술을 포함하도록 개정
- 지자체에서 공공미술을 도입하기 위해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지구 조성시 공공미술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하거나 인센티
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례조항 마련 및 신도시 적용 검토

- 공공미술종합계획 수립
-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조성방안으로 기금제 도입
- *공공건축물은 미술장식비용을 기금으로 조성하거나, 미술장식비용의 일정비율을 기금으
로 조성하여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건축물은 선택적 기금납부로

○공공미술 지원기구 설치

- 공공미술 지원기구는 별도 설치보다는 기금관리 및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문화예
술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
- 건축물 미술장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중이나 전문적 관리기구가 없는 상태이므로
공공미술 지원기구 소관사업으로 재편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10-70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0
Arts Council Korea 110-766

